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석

Case Studies on Gender Analysis of Agricultural Policy

2001. 11.

연구기관
한국여성개발원

농 립 부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석

Case Studies on Gender Analysis of Agricultural Policy

연구자 :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박성정(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송다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오현석(지역아카데미 대표)
김정섭(지역아카데미 연구원)

2001. 11.

* 본 보고서는 농림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한국여성개발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농림부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국가는 정책의 수립, 계획, 시행단계에 있어서 수혜 대상을 남녀로 구분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전제를 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일반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여성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정책의 주 대상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을 위한 일정비율 할당제 혹은 승진 및 위원회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성의 입장에서 역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이미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은 정책의 입안, 시행단계에서 배제되므로 결국은 수혜시 여성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제반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농업정책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농촌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제반 정책이 남녀차별적이라는 의식이 없이 남성중심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농업인으로서 여성의 농업참여는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농촌 현장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집단이 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에서의 주변적 위치는 그들을 농업 관련 정책결정 및 농업 생산자 위치에서 소외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업 소득의 상대적 저하, 농촌의 사회·문화적 후진성 등 농어촌의 여건이 여성들의 위치를 주변적으로 만들어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가족농의 유지·발전이 농업정책의 중점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력의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의 재정립 및 권익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경영 및 변화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여성인력 주류화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즉, 여전히 남성중심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경향이 있고, 농기계 운전 및 농업기술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전문적 능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농업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주변화는 여성의 자율적 영역을 축소시키고 단순 노동력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농촌 현실에 적합한 여성 농업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첫째, 앞으로의 농업은 단순한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과 기술, 직업의식,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생산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여성농업인도 직업적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일반 여성농업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를 확립하고 경영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며 생산을 담당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영농기술과 경영교육 및 농기계 교육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면 생산자 지위 확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여성농업인 대상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생산지에서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영농조합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농업정책 개발과 시행에서 여성농업인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를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 농업정책을 성관점에서 분석하여 성(gender) 요인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성 관점이 주류를 이루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관점의 농업정책 분석은 모든 농업정책 속에 여성농업인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일이다. 해당 농업정책 속에 성(gender) 요인이 삽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성 관점이 주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다. 즉 농업·농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해 농업정책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 관점의 정책분석도구를 유엔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농업환경에 적절한 틀인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분석틀로 만드는데 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촌 지역의 주요인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농촌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은 성분분석의 예시로 선택한 분야이므로 그 분석 경험과 결과는 농업정책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농업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종 농업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농업사회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의 주체로서의 역할 및 지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전문능력을 갖추어 변화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대응능력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연구의 내용

성 관점의 농업정책분석은 농업정책에 내재된 성 관점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성분분석 이론과 외국의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분석 내용을 고찰한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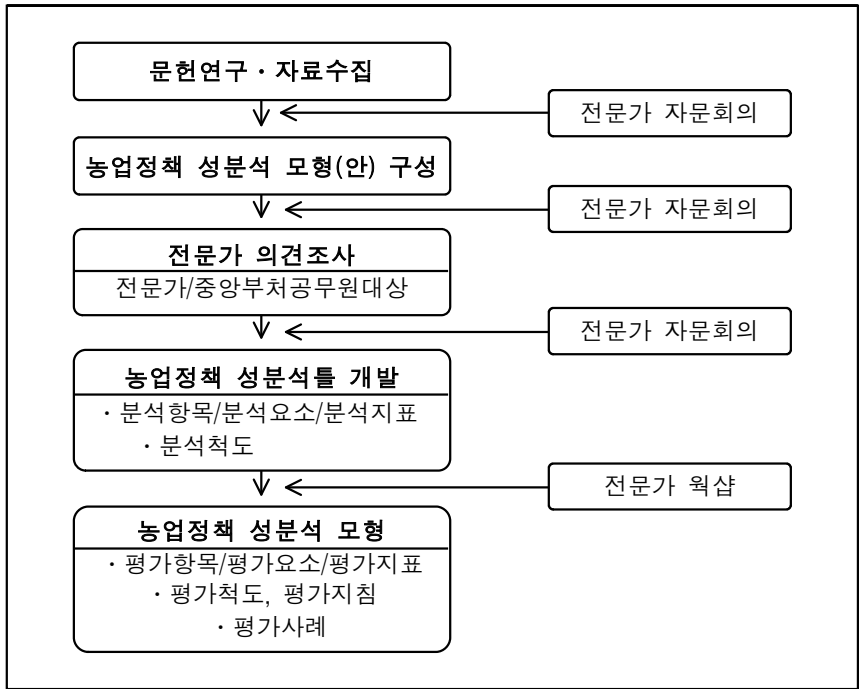
셋째, 성 관점의 농업정책분석 틀을 정립한다.

넷째, 성 관점의 농업정책분석 단계, 항목, 지표를 개발한다.

다섯째, 각종 농업정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한다. 분석대상 농업정책은 정책의 단위에 따라 크게 세가지 차원(①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 ②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 ③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에서 선정하였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농촌인력 육성/영농기술교육/정보화 사업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으로는 농가종합경영자금/농촌생활환경 및 정주권사업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으로는 농가도우미사업을 선정하였다.

다.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

1) 연구절차



<그림 1-1> 농업정책 성분분석 모형 개발절차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를 기초로 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의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정책 성분분석 이론 및 국내외 사례, 사회지표체계 분야의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정책분석 관련 자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 자료, 정책분석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종 농업정책분석 관련 자료, 농업정책분석 지표 및 지침 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의 의견조사는 농업정책 관련 학자, 중앙과 지방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관련기관의 정책 담당자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농업정책 분석모형의 구성과 구조, 농업정책 분석모형의 적절성, 농업정책 분석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농업정책 분석모형(안)의 분석단계, 분석항목, 분석지표를 수정·보완하고, 분석척도 및 분석지침을 개발하여 전문가 워킹과 자문회의를 거쳐 확인하고, 연구자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표의 구성

항목	세부항목
농업정책 분석모형(안)의 구성	농업정책 분석모형(안)의 구성
	농업정책 분석모형 구조
농업정책 분석모형(안)의 적절성 검토	농업정책 분석모형(안)의 분석항목의 적절성
	농업정책 분석모형(안)의 분석지표의 적절성
	농업정책 분석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검토
	농업정책 분석척도의 구성

(3)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전문가 의견조사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고, 본 연구진이 개발한 농업정책분석모형(안)과 분석항목 및 지표에 대한 자문, 그리고 전문가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를 구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및 중앙과 지방의 부서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지의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농업정책 분석모형(안)을 계속 수정·보완하며,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

(4) 성분석 설문지 조사 및 인터뷰

각종 농업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업공무원 교육 연수 담당자 등)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①사전배포, ②회수, ③연구자 검토 후 다시 해당 공무원을 직접 방문하여 문항별 난이도, 타당성,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5) 조사결과 전문가 평가회의

설문지 조사결과 및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정부, 농업인 단체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자문은 주로 농업정책의 성분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제반 정책에서 성관점 반영의 실태와 정책의 성인지적 이행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 성분분석의 분석기준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므로 일정한 분석기준을 정한 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포함된 6개의 정책을 성분분석 사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모든 사업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또한 6개의 정책 분석도 지역에 따라 다소 정책 이행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관점에서 일정한 정책분석 지침을 만들어 추후로 농림부의 정책을 성분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적 시도이며, 추후 각종 농업정책을 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농림부의 제반 정책에서 성주류화가 달성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 개념정의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

생물학적 성(Sex)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의미하며 사람을 남자 혹은 여자로 구분한다. 사회적 성(Gender)은 문화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여성 및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뜻한다.

2)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 주류화의 개념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수행,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양성의 관심과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양성의 동등한 혜택과 평등을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1) WID(Women in Development)

WID관점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초점을 두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사례는 여성을 위한 특정사업으로 가족계획, 여성할당제, 편부모 세대 지원,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 보호, 여성 보건관리, 출산휴가, 영양, 식수, 여성통계, 여성 교육, 여성노동, 여성소득 창출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여성전담 국가기구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2) GAD(Gender and Development)

GAD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비교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의 접근방법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이 변화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변화시켜 간다. 양성간의 권력, 의사결정, 업무분담, 주체성, 자원 통제성을 파악하는 것 등으로부터 시작하며, 그것은 결국 여성, 남성, 아동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주류화(Mainstreaming)

주류화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정책의 주류에 통합시켜 다루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주류화는 '여성 주류화(Mainstreaming Women)'와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로 접근이 가능하다. '여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3) 성분석(Gender Analysis)

정책 및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에 있어서 성별 분업, 혜택 및 이익 분배,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성, 이러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 분석, 결정 권한 등이 포함된다. 성 분석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행해져야 하며, 성 구분 통계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4) 성형평성(Gender Equity)과 성평등성(Gender Equality)

성 형평성은 양성이 평등해지는 과정으로서, 이제까지 양성이 동일한 상

황에서 활동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보상 조치가 취해질 때 진정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뜻한다. 성 평등성은 양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력 및 참여를 보장받고 동일한 지위와 완전한 인간적 권리를 누리고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는 가치지향을 의미한다.

5) 성인지성(Gender Awareness)

이 용어는 생물학적 성(Sex)이 어떻게 사회적 성(Gender)을 규정하는지, 또한 그와 같은 규정이 사회에서 양성의 지위 및 상호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정책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성별 역할과 지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특정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기술을 의미한다. 정책담당자가 '성 인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위 물성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양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6) 물성적(Gender Blind)

명시적으로는 성차별적이지 않지만 특정 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고용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 이론적 배경

가. 유엔의 여성발전전략과 여성주류화¹⁾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성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UN은 북경에서 열렸던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 이후 세계의 각국 정부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성(Gender)의 개념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제 3차 세계여성대회(1985년)'에서 '성에 기초한(gender-based)'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자카르타와 북경회의에서 '성인지적(gender-awareness, gender-sensitiv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성을 주류화(mainstreaming)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하기에 이르렀다.

유엔의 여성발전전략에서는 WID(Women in Development)관점, GAD(Gender and Development)관점, 성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여성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접근된 WID관점에서 성(Gender)과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에 초점이 주어지도록 한 GAD 관점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성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이 활용되기 시작하여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발전(WID)

WID 관점의 여성발전전략(Women in Development: WID)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성 특정사업에 초점을 둔다. 발전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던 것을 문제시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활동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을 발전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WID관점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WID관점의 정책사례는 여성을 위한 특정사업으로 가족계획, 여성할당제, 편부모 세대 지원,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 보호, 여성 보건관리, 출산휴가, 영양, 식

1) 본 주제에 대해서는 김재인·유희정·양애경(1999),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내용에서 요약, 정리한 것임.

수, 여성통계, 여성교육, 여성노동, 여성소득 창출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WID관점은 여성문제를 주로 복지적 차원에서 지엽적으로 접근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인정하고 접근하므로 성공할지라도 여성지위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WID관점의 비판으로부터 GAD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성과 발전(GAD)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발전전략(Gender and Development: GAD)은 문제의 핵심에 있는 행위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발전에 참여하는 데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접근되었다. 즉,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여성을 발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GAD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비교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둔다. GAD관점의 접근방법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이 변화하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둔다.

3) 주류화(Mainstreaming)

주류화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정책의 주류에 통합시켜 다루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주류화는 '여성 주류화(Mainstreaming Women)'와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로 접근이 가능하다. '여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각기 다른 성역할로 인해 여성은 의사결정에 참여해오지 않았으므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이 주요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발전 정책, 프로그램 및 접근방법은 남성의 성 역할과 요구를 주로 반영하므로, 성 주류화를 통해 평등의식이 보편화되었을 때 여성 주류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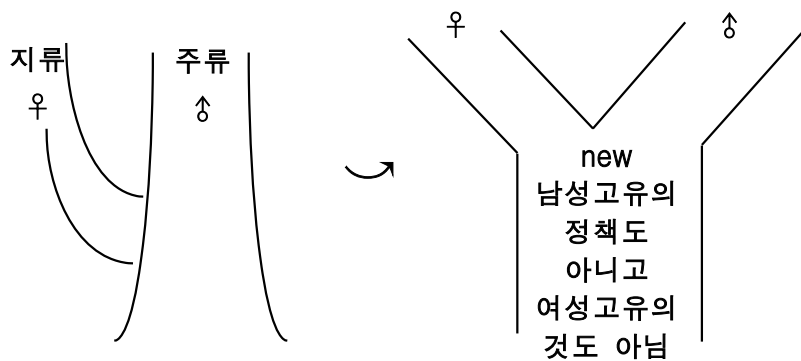
예를 들면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으므로 여성의 주류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

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성들이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성 주류화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4) ‘여성과 발전(WID)’, ‘성과 발전(GAD)’,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의 비교

WID관점과 GAD관점의 목적은 모두 ‘여성의 지위향상’이지만 GAD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평등을 지향한다. WID관점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여성의 문제를 지류로 보았으며, 이러한 지류적 전략은 주류정책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은 여성을 정책에 참여시키되 여성이 정책의 주류에 동등하게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2-1> WID, GAD, Mainstreaming

나. 제 외국의 성 관점의 정책분석²⁾

1995년 북경회의에서 유엔은 성(gender) 평등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2) 본 주제에 대해서는 김재인·김성경·권미수(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된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임.

성관점에서 평가하여 여성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엔의 언급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성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행에 옮긴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이다.

이들 국가중 캐나다와 뉴질랜드 정부가 개발한 성 관점에서의 정책분석 모형(Gender Analysis Model)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76년 캐나다 여성지위처(Status of Women Canada)³⁾가 창설되었고, 1985년에는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성차별을 금지하는 제15조와 제28조가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1995년 성별에 기초한 분석과정을 요구하는 유엔행동강령(Planform for Action)에 대한 조치 및 개발을 위해 동년 캐나다 연방국가 계획(Commonwealth Plan of Action on Gender and Development)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수행을 위해 성 관점의 정책분석모형(Gender- Based Analysis)을 제시하고 있다.

성 관점의 정책분석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및 입법의 차별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정책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초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남녀관계의 본질, 사회적 현상, 사회과정 등을 이해하여 성 중립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성 분석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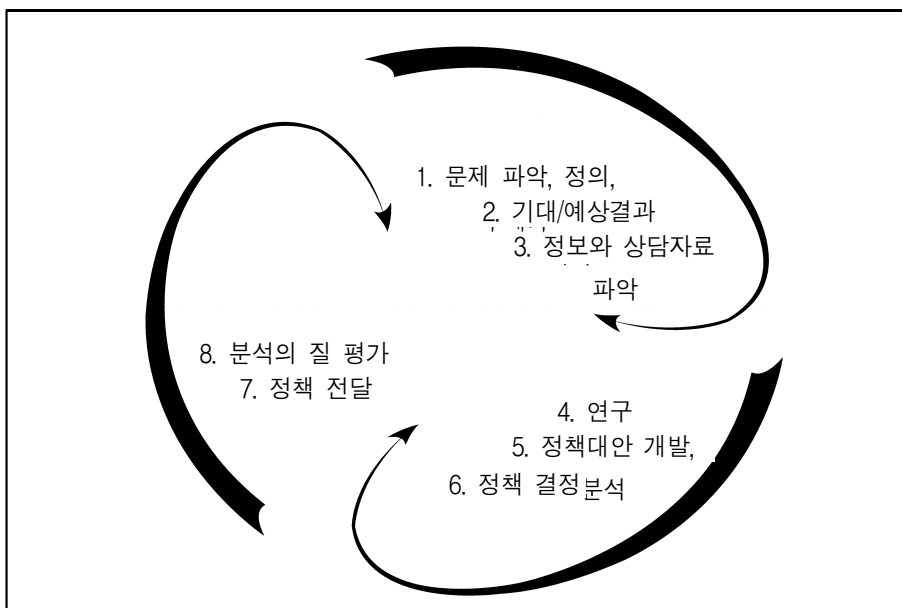
성분석은 현재의 분석의 질을 강화하고, 성을 정책개발 과정의 각 단계에 통합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며, 사고와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자 및 분석자에게 성 관점의 지식과 능력을 부여하고, 현상을 이해토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성 관점의 정책분석 및 개발은 8가지 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단계들은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나 관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 단계로 회귀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Status of Women Canada(1996), *Gender-Based Analysis: A guide for policy-making*.

<표 2-1> 정책분석의 8단계-캐나다

1단계 : 문제를 파악, 정의, 구체화하기 (Identifying, defining and refining the issue)
2단계 : 기대/예상 결과를 파악하기(Defining desired/anticipated outcomes)
3단계 : 정보와 자문자료를 파악하기(Defining th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4단계 : 연구하기(Conducting research)
5단계 : 대안을 개발하고 분석하기(Developing and analyzing options)
6단계 : 정책을 건의/결정하기(Making recommendations/decision-seeking)
7단계 : 정책을 전달하기(Communicating policy)
8단계 : 분석의 질을 평가하기(Assessing the quality of analysis)



<그림 2-2> 정책분석의 8단계-캐나다

단계1-문제를 파악, 정의, 구체화하기

- 문제는 무엇인가?
- 누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가?
-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 개인의 개인적, 직업적, 조직적 배경(성, 경험, 가치관, 신념, 가정, 환경 등)이 개인의 문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요인들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이 문제는 정책분석/개발을 필요로 하는가?

단계2-기대/예상되는 결과를 파악하기

-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다른 사람은 이 정책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 이 정책은 어떤 특별한 결과를 위한 것인가? 이 정책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 이 결과 중 신규 혹은 개정된 정책/입법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책/입법의 개발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는 최선의 수단 혹은 방법인가?
-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의 다른 가치, 목적 혹은 결과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방해되고 있는가?
- 결과측정 지표는 어떻게 확인되어야 하는가?
- 예상결과의 확보에 어떤 모니터 혹은 책임과정이 필요한가?
- 어떤 요인이 결과에 기여할 수 있나? 혹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가?

단계3-정보와 참고자료를 파악하기

- 이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 모든 관점 혹은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 관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 어떤 정보자료가 이용될 수 있는가?
- 누가 정보를 수집/ 공급의 협력자가 될 것인가? 이러한 협력자들과 효과적으로 상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 정책을 밝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하고 적절한가? 기본 데이터 작성의 필요성이 있는가?
- 정책의 범위가 정보의 유용성 및 적절성에 비추어 다시 규정되어야 하는가?

단계4-연구하기

- 분석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은 무엇인가(예: 비용/이익, 사회적 영향, 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영향)?
- 누가 조사의 질문(들) 내용을 결정하는가?
- 조사의 설문내용은 무엇인가?
- 어떤 요인들이 조사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누가, 어떻게 조사와 조사 설계에 참여할 것인가?
- 조사설계의 범위 및 성격이 이 정책 문제에 적합한가?
- 어떤 방법이 적용될 것인가?
- 어떤 유형의 분석이 이루어질 것인가?

단계5-대안을 개발하고 분석하기

- 자료, 정보, 연구가 시사하는 정책대안들은 어떤 것인가?
- 정책대안이 바람직한 결과(2단계 참조)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 자신/조직/사회의 가치관이 검토중인 정책대안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 이 대안들은 앞서 밝힌(2단계 참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각 대안은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 혹은 입법에 어떤 식으로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부합하지 않는지?
- 각 선택대안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각 정책대안의 직/간접적 의미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는가?
- 어떤 요인들이 각 선택사항의 실행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
- 각 대안에 누가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각 대안을 위해 어떤 자료가 요구되고 있는가?
- 어떻게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가?

단계6-정책을 건의/결정하기

- 제시된 대안의 선택에 누가 관여할 것인가?
- 어떤 근거 하에서 권고가 되어야 하는가?
- 정책건의에 있어 배경이 되는 가정과 묵시적 가치는 무엇인가?
- 정책건의의 근거를 위해 어떤 유형의 문서가 필요한가? 배경이 되는 가정과 가치가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권고된 대안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규제 사항(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등)은 없는가?
- 권고된 대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가? 누가 관련되어야 하는가?
- 정책 환경 양상(재정적, 정부정책상의 우선 순위, 기타 정책, 현재의 여론, 정부의 공약 등)의 어떤 측면들이 권고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가?

단계7-정책을 전달하기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 고객 개개인에게 전달된 주된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 정책, 프로그램 및 입법을 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가?

단계8-분석의 질을 평가하기

- 정책분석과 건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누가 정할 것인가?
- 분석의 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 분석의 질에 대한 재검토/분석은 누가 할 것인가?
- 누구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할 것인가?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New Zealand)⁴⁾에서는 성에 기초한 특수한 조언과 업무(gender specific advice and works)를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수행을 위해 성 관점의 정책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성 관점의 정책분석은 뉴질랜드 여성부의 핵심업무이며, 성 관점의 정책분석도구는 정부 각 부처와 사적 영역에서 성분석을 하도록 지원한다.

성 관점에서의 분석은 여성과 남성의 삶은 경험, 요구, 이슈와 우선 순위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성의 삶도 모두가 똑같지 않다고 본다.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는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민족적 정체성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간의 그리고 다양한 여성집단간의 평등한 결과를 이루는 데

4) 인터넷 자료 Ministry of Women's Affairs(New Zealand)(1999), *Gender Analysis*. 참조. <http://www.mwa.govt.nz>

에는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분석의 6가지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정책분석의 6단계-뉴질랜드

- | |
|--|
| <p>1단계 : 예상되는 결과를 파악하기(Define desired outcomes)
 2단계 : 문제를 확인하기(Identify problems and issues)
 3단계 : 대안을 개발하기(Develop options)
 4단계 : 대안을 분석하고 권고하기
 (Analyse opt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5단계 : 정책을 집행하기(Implement decisions)
 6단계 : 모니터하고 평가하기(Monitor and evaluate)</p> |
|--|

단계1-예상되는 결과를 파악하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관련 자료가 어떻게 여성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응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 정부의 정책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결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여성을 위한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목표를 정의해야 한다. |
|--|

단계2-문제를 확인하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gender)으로 인해 정책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분류해내야 한다. ◦ 어떤 이유가 여성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 구성원들의 성차가 원인이 되어 강조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성별 차이의 원인이 분석에서 설명되면 문제를 확실히 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인가? ◦ 요구, 경험, 이슈, 우선 순위 등과 같은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여성들은 차이가 있는가? ◦ 성 차이를 수반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시작된다. |
|--|

단계3-대안을 개발하기

- 각 대안이 2단계에서 발생한 여성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은 어떤 단계에서인가?
- 어떻게 정부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증가시키도록 할 수 있는가?
- 어떻게 기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여성의 요구대로 수정될 수 있는가?
- 무엇이 다양한 여성집단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접근방법인가?
- 여성문제의 해결은 대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단계4-대안을 분석하고 권고하기

-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인 여성에게는 대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정부는 여성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해왔는가?
- 대안을 이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이 정부비용으로 부과되고 있는가?

단계5-정책을 집행하기

- 여성들은 정책변화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서비스/프로그램은 다양한 여성집단에게 어떻게 접근기회가 주어지게 하고 있는가?
- 여성을 위해 공정한 접근기회와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분리된 서비스, 프로그램, 자료가 필요한가?
- 여성들이 동등하게 접근, 그리고 여성을 위해 적절한 주(主)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는가?

단계6-모니터하고 평가하기

- 성에 대한 자료를 모을 곳과 모니터하는 제도가 있는가?
- 여성을 위한 결과가 없을 경우, 정책을 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할 점을 측정해야 하지 않는가?
- 여성을 위한 결과에 기여하는 정책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정책이 있는가?

3. 한국의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와 정책 현황⁵⁾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농업노동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유출하고 농촌경제구조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1980년대 초반 복합영농가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소값 파동, 고추·담배 파동 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지난 90년대 이래 10년 간은 UR 협상과 WTO 체제의 출범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등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우리 농촌은 존립의 위협마저 느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농촌간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이농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고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구조정책의 핵심은 전문적인 농업인구의 육성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과 발전에 있다. 이에 따라 농업(후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면서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한국의 여성농업인⁶⁾ 현황과 실태

1)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960년대 부터 여성의 농업참여는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90년대 이후에도 농업노동력의 여성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청·장년층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고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감소

5) 한국의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현황은 김영옥·김이선(1999) 및 김이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의 의견과 자문을 받았음.

6) 여성농업인은 농업취업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흔히 농촌여성, 농가여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농촌여성은 통합시를 포함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농가여성은 농가의 가구에 속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농촌여성 중에는 농가여성과 비농가 여성이 모두 포함되며, 농가여성중에는 여성농업인 이외에도 농가에 속하면서 농림업에 취업하지 않는 여성, 즉 농림업 이외 부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이 포함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중에는 비농가에 속한 여성농업취업자가 포함된다.

함에 따라 농업생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여성농업인은 이제 농업생산의 기간노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읍면부에 거주하는 농촌여성은 총 217만명이며 이중 15세 이상 농가여성은 193만명이다. 전체 농가여성 중 여성농업종사인구는 152만명이며 여성농업주종사자는 123만명으로 전체 농업노동력의 52.5%에 이르고 있다.<표 3-1>

<표 3-1> 성별 취업형태별 농가인구 분포

단위: 명(%)

	총농가인구	15세 이상 농가인구	농업종사자	농업주종사자
전 국	4,209,799(100.0)	3,700,731(100.0)	3,004,391(100.0)	2,339,732(100.0)
남 성	2,039,633(48.4)	1,771,320(47.9)	1,483,425(49.4)	1,112,228(47.5)
여 성	2,170,166(51.6)	1,929,420(52.1)	1,520,971(50.6)	1,227,500(52.5)

자료: 통계청(2000), 『1999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더욱이, 농업종사인구 중 주종사자의 비율은 여성은 1970년도의 27.7%에서 63.6%로 증가하고 남성은 75.1%에서 62.8%로 감소하는 추세로 농업주종사 인구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은 농업을 주종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업화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겸업비율은 1970년 9.8%에서 1999년 20.5%로 10.7% 포인트 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농업인구의 취업유형 분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은 농업생산의 기간노동력이 되어가고 있다.<표 3-2>

<표 3-2> 성별 농가인구의 농업부문내 취업유형 분포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1999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5세 이상 농가인구	4,218 (100.0)	3,932 (100.0)	3,835 (100.0)	3,762 (100.0)	2,711 (100.0)	2,580 (100.0)	1,929 (100.0)	1,771 (100.0)
농업주종사 비율	27.7	75.1	32.7	65.7	54.7	61.6	63.6	62.8
겸업주종사 비율	3.2	9.8	6.1	10.4	11.7	17.9	12.7	20.5
기타(학생,주부)	69.1	15.1	61.2	23.9	33.6	20.5	23.7	16.7

자료: 농림부(각연도), 『농업총조사』 / 통계청(2000), 『1999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여성농업인 노동력의 비중은 가족 내 영농활동 이외에도 고용노동의 경우 더욱 현저히 증가해, 75년에 25.0%에 머물렀던 여성노동의 비중이 80년에는 42.6%, 90년 55.4%로 증가했으며 95년에는 58.3%에 이르고 있다. 품앗이의 경우에도 75년에는 전체 품앗이노동량의 30.7%가 여성노동력으로 충당되었던 것이 80년에는 절반을 넘어 50.5%로 급상승하였으며 90년에는 63.5%, 95년에는 6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고용노동과 품앗이에서도 여성노동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상황이다.<표 3-3>

<표 3-3> 농가 노동투하량¹ 성별구성 추이

단위: %

	가족노동		고용노동 ²		품앗이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5	64.6	35.4	75.0	25.0	69.3	30.7	66.7	33.3
1980	58.3	41.7	57.4	42.6	49.5	50.5	57.4	42.6
1985	59.3	40.7	51.0	49.0	46.9	53.1	57.2	42.8
1990	55.4	44.6	44.6	55.4	36.5	63.5	52.7	47.3
1995	54.1	45.9	41.7	58.3	37.9	62.1	51.8	48.2

자료: 농가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¹능력환산시간 / ²연고형태의 고용노동 제외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가 증가하고 농업노동력으로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종사자로서의 역할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5세 이상 농가여성을 대상으로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의 78.9%인 약 100만명의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이며, 16%는 경영주, 나머지 5.1%는 가사 등 비경제활동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기여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며 여전히 동원이 용이한 농업 보조자로, 단순노동만을 제공하는 주변적 노동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은 영농종사자로서, 생활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표 3-4>

<표 3-4> 15세 이상 농가여성의 농업 종사상의 지위

무급가족 종사자	경영주		가사종사자	총계
	무배우	유배우		
78.9%	14.7%	1.3%	5.1%	100.0%(1,396명)

자료: 농림부(1995), 『농업총조사』

2)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1) 노동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가 증대하면서 농업노동시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농업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여성농업인들은 과거 여성들이 하던 노동이외 남성의 영역까지 확대된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경작작물이 확대되면서 기술적인 섬세한 작업에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전정숙, 1994), 앞으로 수도작 위주에서 상업농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20-30대의 젊은여성을 중심으로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자가영농에 참여하는 공동경작유형이 정착될 전망이다(김이선, 1997).

그런데, 여성들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면서 농사일로 인한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1987년 연구에서도 83.3%가 농사일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성의 농업노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여성들의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동시간을 보면 경기도(1996) 조사의 경우 농촌여성의 대다수가 하루 평균 약 11시간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농번기의 경우 40대의 41.2%와 60대의 46.9%가 하루 9시간 이상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 이외에도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총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에는 13.4시간에까지 이른다. <표 3-5>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평균노동 시간은 농한기는 여성평균보다 2.2시간이 길며, 농번기는 약 두배에 까지 이르고 있다.<표 3-5>

<표 3-5> 여성농업인의 1일 노동시간 비교 현황

여성평균	가정주부	일반취업여성	여성농업인	
			농번기	농한기
7.5	6.1	8.3	13.4	9.7

자료: 한얼경제사업연구원(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이와 같이 여성들의 노동부담이나 강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에의 구체적인 참여는 제한적이다. 즉, 여성들은 밭농사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반면 경운, 정지, 운반과 같은 작업의 참여는 부진하다.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예컨대 농지의 구입과 매각, 영농자재 구입, 농사일정과 품종 선택, 노동력 조달, 농산물 판매 등이 주로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김중숙·정명채, 1992; 김중숙, 1997). 또한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조직과 관련한 가내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의 소외가 특히 심각하다(김이선, 1997).

대부분 여성농업인들의 기술숙지정도 및 기계운전능력이 낮은 상태이며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는 제한되어 있다(김중숙·정명채, 1992; 정기환, 1997; 김이선, 1997). 따라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업구조 재편과정에서 기술인력이 점차 증시됨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은 단순노동자로서 그 위치가 주변화될 위험이 높다(김이선, 1997).

(2) 건강, 복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경기도(1996)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 여성들은 일반 도시여성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만성상병이환율, 증상호소율, 치아상태, 모성건강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조사응답자 중 특히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61.7%로서, 타 직종에서 14.3%~45.2% 정도인 것에 비해 높았다. 또한 농촌여성의 35%정도가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또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건강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상병시 농촌의 일차 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이용을

이 낮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87). 모성건강의 측면에서도 산전수진율도 도시지역에 비해 낮지만 산후수진율은 더욱 낮으며 출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심지어 농촌주부의 1/3이 자녀 출산 후 3일만에 농사일을 시작했고 주일만에 시작한 이의 비율도 67.4%나 되어(김주숙, 1981) 산후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과 가사노동으로부터 가중한 노동부담을 안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특히 시설원예와 같이 상업농의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노동 중에 여성농업인들은 농부증이나 하우스병과 같은 직업병을 경험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은 자녀보육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농사 중 자녀를 맡길 곳이 적당치 않아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3) 조직활동

여성농업인의 주체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 여성농업인들은 조직경험이 부족하고, 전통적 성역할 의식으로 인하여 조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동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손경년, 1991). 농촌 마을 주민모임인 총회, 농협총대의원회, 개발위원회 등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형식상 한 두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이다. 전국여성농업인회총연합 산하 지역여성농업인회가 결성되어 있고, '96년 농촌진흥청 산하에 생활개선회가 독립법인으로 등록, 활동 중이며,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전국연합회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이익이나 발전을 위한 조직은 아직 부족하다. 마을내에 가부장적 질서가 온존하는 경우 새로운 조직활동이 자리 잡기 어려우며, 소농구조하에서 여성농업인의 빈곤이 노동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나 단체활동 참여를 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여성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는 성별분업과 소극적 의식으로 조직활동에 참가한다해도 보조적인 위치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4) 의식, 가정생활, 생활만족도

농촌주부들은 남편과 같은 정도로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가족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권력구조는 전통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 즉, 이들은 농촌의 공업화와 더불어 농업참여, 가사노동 뿐 아니라 외부 취업까지 하여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있으면서도 가사노동은 주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의식을 보이고 있었다(윤소영, 1991).

여성농업인들은 “남자들은 아무 것도 안 해도 울타리가 되고 기둥이 된다”, “성을 물려줄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등 상당히 가부장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식, 1985). 이와 같이 농촌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밖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나타났다(윤소영,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은 과중한 노동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 가사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노동부담이 더욱 크다. 둘째, 농업인력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크게 낮다. 셋째, 여성농업인 자신들의 의식이 아직 보수적이며 농업인으로서의 주체적 인식이 부족하다(김이선, 1997). 그리하여 실제로는 단순한 농업보조자가 아닌 주 농업생산자로 참여하면서도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농업발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토지나 재산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전정숙, 1994), 아직도 담당하는 역할에 비하면 미흡하고, 부부간에도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농업노동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투여를 하는 반면, 농가경영의 측면이나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소외되고 있고(김종숙·정명채, 1992), 영농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획득할 기회도 남성에 비해 부족하여 농업노동이 기계화되는 추세에서 여성들이 보조적인 위치로 고정될 우려가 있다. 여성농업인 자신들도 수익성이 높은 현대적 농사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힘, 기술 등이 남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김주숙, 1994).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나라 농업노동 투하량의 50%정도를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농업생산의 보조자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제공한다.

나.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활발하게 되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농업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Adjustment Policy)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생계와 복지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채택, 1986년 한국 비준) 제14조에서 농촌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의 생계수준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하고 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표 3-6>

<표 3-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1. 당사국은 농촌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농촌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촌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농촌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해독 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 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 (바)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 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1994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촌여성의 문제를 다루어 북경행동강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여성농업인에 관심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농업기구(FAO)에서는 1995년 제28차 FAO회의에서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개발과 여성(WID)분야의 FAO 행동계획 (FAO Plan of Action for Women in Development)'을 채택함으로써 1996년부터 2001년까지 FAO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축했다. 특히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있어서의 성형평등을 증진하고,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취업기회와 수입을 높이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여 FAO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주요관심을 두고 있다.

- 농업 및 농촌 개발의 성 차원(gender dimension)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와 정보의 사용가능성과 정확성, 이용도를 높인다.
- FAO와 회원국가의 개발전문가가 농업 및 농촌 개발 접근에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 훈련활동을 개발하고 이용한다.
- 농촌여성이 자신들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술과 역량을 강화한다. FAO는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노동 영역에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치의 채택을 증진할 것이다.
- 성 관점을 통합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정책의 수립과 적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농림부 내 여성정책담당관 설치와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농촌여성정책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 말부터 당시 농사원 농촌가정과를 통해 생활개선지도사업이 시행되면서 부터로 볼 수 있지만,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 농촌여성,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농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복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급증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농업인 조직 역량이 성장하면서 농촌여성정책과 여성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1994년 농어촌 발전 특별대책에서 간접적이기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을 필두로, 농협 복수조합원제와 농업인 후계자 가산점제 등 여성농업인의 생산자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은 계획 차원에 머

물러 있을 뿐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던 것이 1996년 농림부 장관 직속으로 농촌여성 정책자문기구를 설치되고 1998년 농림부 내에 여성농업인 정책담당관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정책은 체계적인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여성농업인 정책담당실의 주도로 1998년에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과 가사활동에 대한 노동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치·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돌아오는 농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 정비, 전문여성농업인력 육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 주지하여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의식 개선, 지역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영농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에 따라서 전문여성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실시해나가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 2001년도 계획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와 지위향상을 두가지 중요한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표 3-7>

<표 3-7> 여성농업인 육성 2001년도 시행계획

목표	세부목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의 해외선진농업 연수 ②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①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 확대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참여 확대 여성단체위탁사업의 활성화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지원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의식 고양 ②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③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모자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④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의 구축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의 개발 연구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 농정여건의 변화와 여성농업인 관련정책의 방향

1) 농정여건의 변화와 농업의 기능분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농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다변화시켜 가고 있다. 종전 농업의 기능은 농산물생산이라는 농업의 재화생산적 기능으로서 경제적 기능만이 강조돼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농업의 본래적 기능 외에도 환경적,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서비스 생산영역에서의 농업의 기능이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환경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농업부문의 고용유지기능을 통한 지역 사회 유지기능이 강조됨으로써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의 새로운 명분이 되고 있다.

농업의 사회적 기능의 이와 같은 분화는 특히 90년대 이후 WTO체제 출범을 전후로 서유럽 각 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90년대 하반기에는 선진주요 각 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농업, 농촌기본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현대화하는 한편, 정책을 통한 국가의 농업부문에 대한 개입명분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90년대 전반기의 UR협상타결, WTO체제출범, EU의 공동농업정책개정과 90년대 하반기의 프랑스를 비롯한, 일본, 한국에서의 농업기본법 개정은 이와 같은 농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변화와 함께 학계 및 국제기구 등에서도 농업과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이 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개발전략에 관한 논의는 농업의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y)'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으며, 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이용방식의 변화(레저공간으로서의 농촌)와 노동의 사회적 조직형태의 변화(주5일제, 근로시간의 단축, 휴가시간의 확대 등)는 사회와 농업부문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90년대 초부터 EU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농촌개발전략으로서의 'Leader- Program' 등은 이와 같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의 다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결국, 21세기 새로운 농업은 종전 농산물생산이라는 단일한 재화생산영역에서 농촌어메니티라는 서비스 생산영역이 추가되면서 기능을 분화하고 있으며, 재화생산영역에서는 품질의 고급화가 진행되는 한편, 서비스 생산영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이 부문에 대한 시장형성기를 맞고 있다.

2) 새로운 농업과 여성의 역할

농업이 종전 재화생산의 영역에서 재화생산 및 서비스 생산영역으로 분화되어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한층 강조될 전망이다. 즉 재화생산영역에 있어서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농촌공간에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다양한 형태의 농촌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는 향후 농촌여성의 '여성성'에 더욱 더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영역에만 머무르던 과거의 농업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양적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성노동력과 이를 대체하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재화생산영역에서의 고품질에 대한 요구와 농업의 서비스기능의 확대는 고객에 대한 대면적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방식을 요구함으로써 경영체 내의 여성의 역할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농촌지역 내 여러 생산활동 중 식품가공 등 농촌수공업분야와 농촌관광분야 등에서는 경영에 대한 여성들의 주도적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 분야의 재화나 서비스생산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우수성이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들 생산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마련과 경영체 내의 여성의 지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매우 긴요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농업부문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이며, 이는 농업의 서비스 생산기능이 확대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유럽은 70년대 말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식량자급을 넘어 미국과 세계농산물시장에서 경쟁구도를 갖추게 되며, 이후 생산

을 자극하는 시장정책을 후퇴시키는 한편, 농업의 서비스생산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70년대 하반기 이후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고 한편으로 유턴현상에 의한 농촌인구의 증가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농업의 사회적 기능이 농정의 우선순위에 오르게되며,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으로 농업의 서비스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분리, 농업사회보장정책의 확대 등으로 경영체내의 여성배우자 및 자녀 등에 관한 법률적 지위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들어 유럽 각국에서 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공동농업정책 개정을 통해 환경농업 시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품질 농업생산 부문과 서비스 생산영역에서의 여성의 우월적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농촌개발정책의 경우 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으며(EU, Agriculture in Europe : the Spotlight on women, 2001), 아일랜드의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Role of Women in Agriculture), 프랑스 농림성의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Le statut des conjoints d'exploitations et autres membres de la famille associés aux travaux d'exploitation)' 등의 활동은 그와 같은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3) 여성농업인 관련정책의 새로운 방향

이와 같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활동영역의 다양화는 확실히 농업 활동 수행에 있어 성역할의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고 있다. 예견되는 성역할의 변화에 여성농업인 관련 농업정책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내지는 제도적 고려사항이 심도있게 연구되어 질 필요가 있다.

먼저, 농업에 관한 법률적 정의문제로서 현재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에 관한 정의를 농업의 기능분화의 현실적 내용과 향후 농업에 있어 기대되는 성역할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책적용의 대상이 되는 농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업, 농촌기본법은 농업에 관한 정의를 여전히 재화생산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있어 앞서 지적한 농업기능의 분화내용(서비스생산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활동에 대한 농업정책의 대

상폭을 협소하게 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1999년 농업기본법 개정시 농업에 대한 정의를 재화생산영역과 서비스생산영역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재설정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인 경영영토계약(CTE : Contrat Territorial d'Exploitation)을 통해 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에 대한 공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을 주의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

<표 3-8> 농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비교표

한국 농업농촌기본법(2000.1)	프랑스 농업기본법 (1999.7)
<p>[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p> <p>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증축업</p> <p>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p>	<p>“식물 또는 동물적 성격의 생물학적 순환을 제어·이용하며, 이러한 순환과정에 필요한 하나 혹은 여러 단계의 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간주한다. 경영자의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업생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경영체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 그리고 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공사작업 등도 마찬가지로 농업활동에 속한다. 경영체에서 이뤄지는 관광이나 레저 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활동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바다양식활동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속한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농업활동으로 간주한다.”</p>

자료 ; 오현석, '농업에 대한 학술적, 법률적 개념의 비교', 21세기 농정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1999.4

농업의 기능분화에 따른 농업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개념의 광의화와

7) 오현석, '프랑스 농업구조정책의 전개와 98년 농업기본법 개정안의 함축', 농정포럼 월례세미나 시리즈 62호, 1998.8.

함께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과 제도에 있어 시급히 다루어야 할 것은 농업 경영체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 특히 여성배우자에 관한 법률적 지위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제이다. 92년 신농정 하에서 추진된 전업농정책 등 각종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사회정책)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농업활동의 전문화추세로 인하여 농업활동은 점차 과거 사회학적 단위인 '농가'개념에서 경제활동단위인 '농업경영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자 여성 등에 관한 법률적 지위문제를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⁸⁾

8)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각 종 농업사회보장정책이 강화되면서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 내에서 여성배우자와 자녀 등 경영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률적 지위문제가 정밀화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지위문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성관점의 농업정책 분석모형⁹⁾

정책의 성분적은 정책 개발 및 평가의 주요 준거로 성(gender)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이 남녀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반영하여 정책의 성인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이나 사업이 기획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요구를 고려했는지, 시행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참여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사회의 성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관점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 분석의 도구로서 구체적인 분석단계, 분석항목, 분석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기획에서, 시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분석하는 Project Cycle Analysis의 접근을 취하였다. 정책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성관점 고려의 중요성은 물론, 시행과정에서의 성관점 준수, 그리고 결과평가단계에서 성 영향성 평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업정책의 성 분석을 위한 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3단계의 접근을 취하였다.

첫째, 정책분석을 위한 단계를 기획단계, 시행단계, 결과평가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단계 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분석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셋째, 각 항목들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 분석지표를 구성하였다.

가. 분석단계

기획단계에서는 개발될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관련 이슈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여성의 요구조사, 자문, 성분리 통계의 활용 등 충분한 기초 조사 및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고려되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기

9) 농업정책 성분적들은 김재인 외 (2001), 『성관점의 정책분석 모형 개발』에서 마련된 분석틀과 지표를 참고로 했음.

획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노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행단계에서는 성인지적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담당자의 성인지성, 정책의 전달,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의 반영 등을 검토하여 시행과정의 성인지적 접근 노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 평가단계에서는 성인지적 사업의 목표달성도, 성별 영향 평가 등을 검토하여 이 정책 및 사업이 여성 지위 향상 및 사회의 성평등성 구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분석항목

기획단계의 분석항목으로는 목적 설정, 추진방향 제시, 근거 법령 정비, 연도별 지원 수립, 사업개요 수립을, 시행단계의 분석항목으로는 추진체계, 시행사항 모니터링을, 결과평가단계의 분석항목으로는 성 영향 평가, 결과 수립 및 활용을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항목의 선정은 분석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서'의 사업 항목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분석지표

기획단계의 성인지적 접근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첫째, 정책의 목적 설정시 여성관련성 및 여성의 요구 고려, 성 분리 정보 및 여성의 자문 활용, 성인지적 목표의 수립, 성별 영향 예측 고려, 둘째, 성별 추진방향의 제시, 셋째, 성인지적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넷째,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시 성별 지원계획 수립, 수혜대상 중 여성 포함, 성별 예산편성, 여성지원 예산 확보, 다섯째, 사업개요 수립시 정책심의기구에 여성참여, 분야별 지원대상 선정 및 선정 기준에 여성 배려 등을 제시하였다.

시행단계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첫째, 추진체계에 포함된 담당자의 성인지성, 추진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정책 전달, 둘째, 시행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였다.

결과 평가단계에서 최종적인 정책의 성인지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첫째, 성인지적 목표의 달성도, 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 기여도, 둘째, 수혜 여성의 만족도, 관련된 후속 정책의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표 선정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농업정책의 성 분석 지표'를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제적 분석 작업을 위해 '성 분석 질문지'를 제작하였다<별첨 참조>. 그리고 분석결과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농업정책 성 분석 결과 정리'표를 작성하였다.<표4-1>

<표 4-1> 농업정책의 성분식 지표

단계	분석항목	항목별 분석지표	
기획	목적설정	여성관련성	사업기획시 해당사업이 여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성별 요구 고려	해당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여성의 자문참여	사업기획을 위한 자문회의에 여성이 참여하였는가
		성분리 통계	해당사업과 관련되어 남녀별 분리된 정보(통계)가 있는가
		성인지적 목표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었는가
	추진방향 제시	성별 추진방향	이 사업이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는가
		성별 추진방향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추진방향이 별도로 제시되었는가
	근거법령 정비	성인지적 사업의 법적 근거	해당사업에 여성관련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가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성별 지원계획	여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사업량, 사업비)이 수립되어 있는가
		대상여성 비율	정책수혜대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해 놓았는가
		성별 예산 편성	남녀별로 구분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사업요수립	심의기구에 여성참여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는가
		지원영역 선정시 여성고려	분야별 지원영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참여 비중이 높은 분야가 배제된 경우는 있는가
		수혜대상 기준 설정의 성별 고려	수혜자 대상 기준 설정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였는가
	시행	추진체계	담당자의 성인지성
여성담당자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성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업내용의 전달			사업내용이 수혜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
시행사항 모니터링		모니터링	사업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이 있는가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시행과정에 참조, 반영되었는가
		성별 예산집행	성별 예산집행이 있는 경우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평가	사업의 성영향 평가	목표달성도	해당사업에서 설정한 여성관련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여성지위향상 기여도	해당사업이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 및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가
	결과수렴 및 활용	수혜 여성의 만족도	수혜 여성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사업시행후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미반영된 여성요구	해당사업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여성의 요구가 있는가

라. 분석 기준

성분석 질문지에 따른 조사결과는 기획단계에서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시행단계에서 시행과정의 효율성 및 시행여건의 적절성을, 결과평가단계에서 목표의 달성도 및 정책 효과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 4-2> 분석기준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시의적절하며, 전체 농정방향에 부합하는가
	세부 사업계획의 여성관련성	-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가 -계획 수립시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시행	성인지적 정책시행의 효율성	-시행담당자가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성인지적 정책 시행 대응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성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여성관련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해당 정책이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5. 농업정책의 성관점 분석사례 및 여성농업인의 농촌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도 분석

가. 성분분석 대상 농업정책의 선정

1) 성분분석 연구대상 농업정책의 범위

농업정책의 범위는 크게 보아 농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 정책을 두루 아우르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농림부가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업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책수혜를 부여하고 있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포함된 제시책들을 성분분석 대상 농업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포함된 각종 농업시책들은 농림부의 정책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시책들로서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정책목표가 반영되어 있는 시책들이다.

'농림사업시행지침'은 과거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의 농정추진방식을 지방화시대와 WTO 신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총 57조원의 재원을 마련,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1994년 12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농림부는 유사정책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확대해나갔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총 5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별책] 농업기계화, 논농업직불제, [제4권제41] 농업경영 종합자금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은 각 시책별로 정책목적, 시책 및 추진방향,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업세부지침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기획 및 시행, 평가단계에서의 성분분석을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광의의 농업정책(농업관련 법, 제도, 정책)	
	농림부 예산 하에 수행되는 각종 농업정책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 각종 시책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시책들)

<그림 5-1> 성분분석 연구대상 농업정책의 범위

2) 성분분석 대상 농업정책의 사전적 분류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검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분분석 틀을 각종 농업정책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분석하기에 앞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림부의 농정목표 전반에 대해 파악한 후, 정책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각종 농업정책들을 성인지적 관점의 유무에 따라 선행적으로 분류하였다.

(1) 농업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농림부는 농정목표들과 함께 농정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농업정책들을 분류하고 있다.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농정목표(2000년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농정목표-2000년도>

-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축산업을 개방시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만족을 위한 유통개혁의 가속화
- 신지식농업인 육성 및 첨단기술의 산업화
- 농업·농촌정보화 기반구축
- 농산물 수출확대로 개방시대 우리농업의 활로개척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 농업인을 주인으로 하는 협동조합개혁
- WTO 협상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

2) 성분적 대상 농업정책의 사전적 분류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검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분적 틀을 각종 농업정책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분석하기에 앞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림부의 농정목표 전반에 대해 파악한 후, 정책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각종 농업정책들을 성인지적 관점의 유무에 따라 선행적으로 분류하였다.

(1) 농업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농림부는 농정목표들과 함께 농정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농업정책들을 분류하고 있다.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농정목표(2000년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농정목표-2000년도>

-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축산업을 개방시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만족을 위한 유통개혁의 가속화
- 신지식농업인 육성 및 첨단기술의 산업화
- 농업·농촌정보화 기반구축
- 농산물 수출확대로 개방시대 우리농업의 활로개척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 농업인을 주인으로 하는 협동조합개혁
- WTO 협상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

농림부의 각종 농정목표들은 대부분 국가적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성인지적 관점을 대부분 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농정목표들은 접근수단으로서 복수의 세부시책들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책들 또한 각각 제시한 정책목표 내용 가운데 성인지적 관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농업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등, 농업정책에 대한 목표와 수단 등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간 농업, 농촌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에 근거해 수

립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농업인력 육성 등의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인력육성, 사회적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정책연구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 시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표 5-1>

<표 5-1>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주요시책(2001-2005)

분야	세부시책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시스템구축, 여성농업인의 해외선진농업연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의 기계화추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추진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촉확대,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참여확대, 여성단체위탁사업의 활성화, 여성농업인 단체활동지원,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의식고양,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모자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제도정착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연구,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정비

(2) 성분분석대상 농업정책 최종선정

여러 유형의 농업정책들 가운데 현재 정책적인 시의성이 클 뿐만아니라 성분분석에 필요한 관련자료 수집의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부의 정책관련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 표와 같이 6개의 정책들을 성분분석대상정책으로 선정하였다.

<표 5-2> 성분분석 대상 농업정책의 선정

유형	성분분석 대상정책
개인(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후계농업인육성, 영농기술교육,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사업,
단위사업(성중립적)정책	농업경영자금지원사업, 농업생활환경개선 및 정주권개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농가도우미 사업

나. 후계농업인 육성

1) 사업의 여성관련성 및 여성의 요구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1992년까지만 해도 여성농업인 선정비율이 전체의 2.4%에 머무는 등 매우 부진하였으나, 97년 이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함께 10%대를 넘어서면서 1999년에는 선정비율이 20%대에 이르고 있다. 2001년부터는 학력과 교육훈련, 영농경력 및 영농기반 등 선발평가기준을 여성에 대해 하향조정함으로써 남성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군별 20% 이내에서의 우선선정,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한 목표의 양적관리(2001-2005 사이 4000명 선정, 2004 년까지 여성우선 선정비율 30% 목표) 등으로 농업정책 중에서는 대표적인 성인지적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여성농업인 단체 등에서 제기한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세부 정책목표 및 시행지침 등에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여성농업계의 이해가 정책연구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의 경우 여성농업인 우선선정과 목표의 양적관리로 인해 오히려 남성 농업인들로부터 역차별적 정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촌현장에서의 여성농업인들의 역할변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농가인구의 여성화, 노령화의 급진전과 영농형태가 벼농사 중심에서 원예, 축산 등 소득작목 위주로 바뀌에 따라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비율이 1970년 28.3%에서 1999년에는 52.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생산현장에서의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함께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져오고 있다. 농림부는 2002년까지 농정분야의 여성참여비율을 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을 세우는 등 여성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 지위문제에 있어서도 목표관리가 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농협조합원자격에 대한 복수조합원제 도입과 조합원자격제한 완전 철폐 등 민간조직인 농협조직 내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각종 농정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23%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 200 만명 가운데 여성조합원비율이 17%, 조합여성임원비율 0.2%, 대의원비율 0.5% 등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다.

2)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사업개요 및 목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및 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줄어들어 따라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80년대 초부터 비중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청장년층의 후계농업인을 발굴하여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해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한 자로서 학력과 교육훈련, 영농경력 및 영농기반 등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영농설계에 따라 20-50 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분야별로 수도작의 경우 30-50백만원, 축산분야 20-30백만원, 기타 20-5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국고용자 100%, 연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의 조건이다.

(4) 지원대상사업

<표 5-3> 후계농업인 육성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분야별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경종 농업 분야	수도작 / 원예 (채소, 화훼 등) / 과수 / 특작 / 복합영농 등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축산 분야	한(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자료 : 농림부, 2001 농림사업시행지침.

(5) 대상자 선정방법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지원자들에 대해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과 점수를 배정해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이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지원자를 시군에 추천하면, 시군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역농업여건과 품목간 균형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평가방법 및 배점에 있어 남성에 비해 우대적용하고 있다. <표 5-4>

<표 5-4>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지원자에 대한 성별 평가방식의 차이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남자	여자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130점)	1. 학력 (80점)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 농업전문교육원 : 80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70점 - 일반대학(4년제)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농대, 농전, 자영농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농고졸업자 : 7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60점
	2.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50점 - 3개월 이상 : 50점 - 2개월 이상 : 40점 - 1개월 이상 : 30점 - 15일 이상 : 20점 - 7일 이상 : 10점	- 2개월 이상 : 50점 - 1개월 이상 : 40점 - 15일 이상 : 30점 - 10일 이상 : 20점 - 5일 이상 : 10점
영농경력 (100점)	- 6년 미만은 50점으로 하되, - 6년 이상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1년 미만 0점 . 1년 이상 6년 미만 50점 . 6년 이상 7년 미만 60점 . 7년 이상 8년 미만 70점 . 8년 이상 9년 미만 80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90점 . 10년 이상 100점	. 1년 미만 0점 . 1 - 4년 미만 50점 . 4 - 5년 미만 60점 . 5 - 6년 미만 70점 . 6 - 7년 미만 80점 . 7 - 8년 미만 90점 . 8년 이상 100점
	* 영농 4-H 경력포함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 전 영농 중사경력도 인정 * 군 근무경력(보충역 포함)은 영농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 단위로 5점씩 가산(1년 미만은 5점)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영농기반 (170점)	<남자> - 2.0ha 이상 : 170점 - 1.5ha~2.0ha 미만 : 150점 - 1.0ha~1.5ha 미만 : 130점 - 0.5ha~1.0ha 미만 : 90점 - 0.2ha~0.5ha 미만 : 50점 <여자> - 1.5ha 이상 : 170점 - 1.0ha~1.5ha 미만 : 150점 - 0.5ha~1.0ha 미만 : 120점 - 0.2ha~0.5ha 미만 : 80점 * 본인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 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의 경우 70%까지 인정)

자료 : 농림부, 2001 농림사업시행지침

(6) 지원실적

지난 10년간(1992-2001) 총 74,284명이 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었으나 여성의 비율은 평균 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근년들어 여성 선발비율이 증가해 92년 2.4%에서 1999년 20.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후계농업인 후보에 대한 신청인원과 선정인원이 모두 감소하면서 여성비율이 하락하였다(2001년 14.1%). 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선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999-2001년 남성 44-48%, 여성 51-54%). 그러나 여전히 전체 신청인원수와 선정인원 수에 있어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실정이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림부는 2001년 2,100억원의 예산지원에 이어 2002-2004년까지 총 8,100억원(선발인원 18,0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5-5> 여성농업후계인 육성현황

연도별	후계자수(A)	여성수(B)	비율(B/A)
합계	68,784	5,500	8.0
1992	9,000	213	2.4
1993	9,000	267	3.0
1994	8,340	442	5.3
1995	9,730	595	6.1
1996	8,227	707	8.6
1997	8,526	823	9.7
1998	7,862	1,011	12.9
1999	4,819	980	20.3
2000	4,674	859	18.3
2001	3,270	462	14.1

자료 : 농림부 농촌인력과, 2001

<표 5-6> 후계농업인 육성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92~'99년	2000년	2001년(예산안)			2002~2004*	
			소계	신규후계자	취농창업후계자		
사업량	109,850	4,674	3,500	3,000	500	18,000	
사업비	계	1,021,347	150,000	110,000	90,000	20,000	810,000
	용자	1,021,347	150,000	110,000	90,000	20,000	810,000

*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2001-2005년 사이 후계여성농업인 4,000명을 선발할 계획임. / 자료 : 농림부, 2001 농림사업시행지침.

3) 사업의 성분석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p>-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2000년 까지는 후계농업인 선정시 남자와 여자의 평가기준이 동일하는 등 상대적으로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이 불리한 처지였으나 2001년부터는 여자에게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시군별 배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토록 하는 등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목표에서 명확히 설정되고 있음.</p>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시의적절하며, 전체 농정방향에 부합하는가 : 최근 들어 전체 농업종사인력의 과반 이상을 여성농업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후계농업인 선정시 여성후계인의 비율을 우선배정의 형식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정책목표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됨. 여성후계인 육성을 위한 이와 같은 목표설정은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상위 국정지표에도 부합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음.</p>
	세부사업계획의 여성관련성	<p>-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여성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학력,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 평가항목 배정에 있어 여성의 경우 배점기준을 남성에 비해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p> <p>-계획수립시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여성농업인 단체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p>
시 행	성인지적 정책시행의 효율성	<p>-시행담당자가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여성농업인 선정비율을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목표의 양적관리 때문에 시행담당자가 성인지적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p> <p>-사업관련한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 사업시행단계 상에 위치한 관련 공무원들이 동 사업에 대한 사업취지와 목적 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담당 공무원의 배치와 홍보, 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성인지적 관점의 목표에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농업인의 탈락비율이 여성농업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일부 시군지역에서는 남성농업인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제기되고 있음.</p>

단계	분석기준	분석
시행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p>-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p> <p>: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목표가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여성선정비율의 제시, 선정조건에 있어서 여성의 영농자격과 조건에 대한 우호적 배려가 되고 있으나, 지원시설 등이 수도권, 축산 등 남성위주의 영농형태인 전통적 농업형태에 국한되어 농촌관광 등 향후 여성농업인들이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로 지원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p>
성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p> <p>: 2001년의 경우 신규후계농업인 신청대비 선정비율은 남성이 48.1%인 반면 여성은 50.9%로서 여성선정비율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음. 여성농업인 후계자 선정비율은 1992년도의 경우 전체의 2.4%에 불과하였으나 95년 6.1%, 97년 9.7%, 2000년 18.3%로 꾸준히 상승해왔음. 그러나 2001년에는 다시 14.1%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2001년부터 적용된 여성에 대한 우호적 평가조항의 신설과 여성에 대한 20% 범위 내 우선 선정시책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서 여성비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수립이 필요함.</p>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p>-해당 정책이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p> <p>: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된 사업으로서 지난 92년 이후 전체 후계농업인 선정인원 68,774명 가운데 평균 8%에 해당하는 5,500명을 여성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였음. 전통적으로 농업경영주가 남성이었던 농촌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 육성은 농업경영상의 성역할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농촌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권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p>

다. 영농기술교육 사업

1) 사업의 여성관련성 및 여성의 요구

여성의 농작업 범위 및 참여수준 확대로, 영농기술 및 지식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의 가정관리 위주 교육은 변화하는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고, 농촌에서의 여성의 통제력 증대 및 세력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교육기관들이 전통적으로 시행해온 교육의 제공에만 집착하고 여성농업인의 새로운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

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교육의 기능을 현상유지에만 국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앞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영농기술교육 기획이 필요하다. 여성은 영농기술교육의 수요가 없다는 생각, 그리고 기술이나 농기계교육은 여성이 학습하기 어렵다는 성역할 고착적 생각에서 정책기획이나 시행 담당자들이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진취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되더라도 담당자들의 우려처럼 여성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사나 농작업에 바빠 참석치 않는다면 실효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에게 기술교육 참여의 필요성, 생산자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 전망 등 전문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새로 기획된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및 탄력적 교육시간대의 편성 등 교육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개념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영농기술 및 농기계교육, 농산물 가공·상품화, 농작업관리·노동경감기술 등을 교육하여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영농기술교육사업의 추진 배경

- ① WTO 체제하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② 과학적 영농,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의 제고로 지식기반 신기술, 친환경적 농업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③ 농업보조인력의 부족, 영농의 기계화로 농기계 사용 능력 및 농기계 정비기술의 습득이 필요함. 남성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함.
- ④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 및 역할 증대로 여성농업인을 남성농업인과 같은 주도적 생산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3) 영농기술교육사업의 추진 목적 및 방향

- ①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능력 배양.
- ② 영농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 배양.
- ③ 농촌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 배양.
- ④ 농기계 이용자에 대한 안전 이용 및 정비점검 능력 배양.
- ⑤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능력 및 농기계 사용능력 배양

(4) 여성농업인 교육정책

1998년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정책이 중시되어 여성대상 영농기술 및 농기계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200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시행계획’자료에 의하면, 교육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영농기술교육, 전문농업경영교육, 초급여성농업경영인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영농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문영농기술 및 농기계조작훈련, 농산물 가공·상품화, 농업경영·정보활용능력, 농작업관리·노동경감기술, 스스로 농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생활기술 및 정보화 기술을 연계하여 농업지식 기반을 확충하고 여성농업인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지식·기술·정보 제공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농업경영교육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서 영농경력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마케팅, 정보화,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교육하여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중견여성농업경영인반을 운영하며, 20개 농과계 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여성반’을 연차적으로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농협지도자교육원은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교육을 통해 농업경영장부 기록 및 분석기법, 농업경영과 벤치마킹 기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초급여성농업경영인교육은 귀농자 및 영농경력이 적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 직업의식 키우기, 기초정보화, 농촌정착사례 등을 교육한다.

(5) 교육실태 및 교육요구

① 교육실태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은 주로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농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성전담교육이 아닌 일반농업인교육의 여성참여율은 10% 정도에 머물러 있고(김영옥·김이선, 1999), 대학, 농협, 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관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중 17%만이 여성농업인 교육이다(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9). 여성대상 영농기술교육이나 농기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기획시 아직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분업이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농업인교육은 주로 생활개선사업 내에서 의식개선 및 생활교육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점차 영농기술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중심 영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을 보면, 각종 취미교육, 자녀교육, 가족관계 교육 등이 주요 주제이며, 여성농업인들은 이러한 교육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대비되는 '여성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은 '여성교육'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딸기나 고추, 버섯 등 특정 작목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축협의 축산기술교육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김영옥·김이선, 1999). 농기계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흥미와 만족도는 크나, 집에 돌아간 후 농기계를 작동할 경우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낮고 기술이 체득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재배기술교육은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과정이 개설되고 있어, 새로운 작업에 대한 기술을 배울 기회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9)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주제는 일상생활관리교육이 전체의 5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식 및 인성개발교육 24.4%,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16.9%, 단체 및 정책참여교육 2.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별 교육주제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5-7>

<표 5-7> 교육기관별 교육주제

영역	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대학	지방자치단체	전체
의식 및 인성개발교육		67(19.4)	39(34.5)	15(31.9)	14(28.6)	135(24.4)
단체 및 정책참여교육		7(2.1)	6(5.3)	2(4.3)	0(0.0)	15(2.7)
일상생활관리교육		215(62.3)	54(47.8)	15(31.9)	26(53.1)	310(56.0)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56(16.2)	14(12.4)	15(31.9)	9(18.3)	94(16.9)
전체		345(100.0)	113(100.0)	47(100.0)	49(100.0)	554(100.0)

자료: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9).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p.16.

② 여성농업인의 교육요구

조사(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9)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교육희망 영역은 의식 및 인성개발교육 49.8%,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22.1%, 일상 및 가정생활교육 19.4%, 사회단체 및 농업정책 참여교육 8.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농업인으로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으로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교육 22.4%, 컴퓨터 17.6%, 농업정보 17.6%, 농업기술교육 13.9%, 농업경영 11.0%, 환경교육 9.9%, 유기농업 7.3% 순으로 요구하고 있다.<표 5-8>

<표 5-8>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요구 우선순위

내용	빈도(%)
농산물 유통, 판매	165(22.4)
농업정보	129(17.6)
컴퓨터교육	129(17.6)
농업기술	102(13.9)
농업경영능력	81(11.0)
환경교육	73(9.9)
유기농법	54(7.3)
기타	2(0.3)
전체	735(100.0)

자료: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9) p.41

교육기관이 인식하고 있는 여성교육요구는 앞에서 조사된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요구와 차이가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일상생활관리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고, 그 다음으로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만이 여성농업인의 가장 큰 교육요구가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는 양 교육에 대한 요구를 60.5% 대 36.8%로, 농협은 73.7% 대 10.5%로 인식하여, 각 교육기관의 여성교육 목표 및 강조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상생활관리교육은 여성농업인의 필요 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의식 및 인성교육과 농업경영기술교육은 요구보다 교육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여성농업인의 참여제약 요인

여성농업인은 가사·농업을 함께 하는 이중적 역할로 시간이 부족하여 영농교육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단순 생산노동만을 담당하는 보조자라는 역할인식으로 전문영농교육 참여에 소극적이며, 새로운 농업기술 및 농업동향에 대한 정보접근이 미흡하고 상호간 정보교류의 기회가 적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수적인 농촌풍토로 인한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이해 부족, 남성위주 교육진행 방식, 교통 불편,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이 여성의 교육참가를 어렵게 한다.

교육홍보 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유선방송, 신문, 교차로·벼룩시장 등 홍보지, 반상회보 및 지역 뉴스레터지 등의 활용,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시 교육과정 홍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홍보활동 촉구 및 현장지도 강화, 기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농민신문, 인터넷 등에 게재된 교육광고를 보고 직접 신청하는 적극적인 여성참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족단위 교육프로그램, 온라인교육, 현장교육 등 여성의 참여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영농기술교육이나 경영교육 참가도는 크게 저조하여 교육이 농업에서의 여성농업인 주류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면담 결과, 교육담당자들은 여성의 영농기술교육 요구는 농촌사회에서의 현재의 성 역할을 기반으로 교육요구가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성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즉, 여성의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더라도 여성의 참여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현실적 요구가 있을 경우만 그 요구에 기반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켜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으며 그러한 생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취적 취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해도 현재 여성의 요구가 없어 참여율이 낮으면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교육계획 및 추진실적

① 영농기술교육(2001 -2005)

계획: 농진청 210천명, 농협중앙회 4.1천명

추진실적(2000년): 농촌진흥청의 경우, 전문영농기술교육 12,099명, 농업경영교육 1,238명, 농업정보화교육 22,289명, 영농신기술체험교육 572명이고, 농협중앙회는 신지식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에 335명을 교육하였다.

② 전문농업경영교육(2001 -2005)

계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여성농업인 대상 900명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여성반 1,110명

농협지도자교육원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교육 2,200명

초급여성농업경영인교육 900명

추진실적(2000년): 농업연수부 여성농업경영자교육이 48명, 농협중앙회의 농축산경영이 187명이며, 농업연수부의 귀농자부인교육이 38명이다.

③ 세부사업

i) 사례1 - '품목별 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 중 여성교육계획 (2001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중. 사업주관기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표 5-9> 2001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명)	사업비				
		사업비 (계)	예산액(재원명)			지방비
			계	국비	보조	
계	589,170	5,446	2,845	244	2,601	2,601
<기술지도>	6,000	236	236	236		
품목별 전문교육(중앙)	6,000	236	236	236		
<기술지도사업보조>	561,820	4,440	2,224	8	2,216	2,216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00	3,000	1,500	-	1,500	1,500
품목별 상설교육	60,000	600	300	-	300	300
청소년교육	11,000	330	165	-	165	165
생활기술과제교육	181,720	328	168	8	160	160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9,120	182	91	-	91	91
<농촌활력화사업>	21,350	770	385		385	385
농업기계교육훈련	21,350	770	385		385	385

자료: 농림부(2001). 농림사업시행지침서. p 1551

일반교육도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그 참여율이 낮으므로, 여성대상 교육사업만을 중심으로 위 사업을 분석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사업계획 중 여성교육(생활기술과제교육,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비중은 사업량(인원)을 기준으로 전체의 32.4%(생활기술과제교육 95.2%, 능력개발교육 4.8%)이고, 전체 사업계획 중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비중은 사업량(인원)을 기준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여성대상 별도의 교육계획(사업량)은 전체의 32.4%에 달하나, 그 가운데 생활기술과제교육이 95.2%, 능력개발교육이 4.8%로 전문기술교육의 비중이 매우 낮다. 전체 대비 여성교육 사업량 비중도 9.4%(능력개발교육은 1.5%)에 불과하다. 교육수요조사 방법으로는 “교육 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별수요조사가 체계적으로 접근되고 있지 않다.

ii) 사례2 - 2001년 분야별 농업인 교육계획 중 여성교육계획(2001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중)

교육계획 중 여성교육계획(농촌여성대표지도자교육, 농촌여성지도자교육,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농촌여성과제교육 포함)은 전체의 24.2%, 능력개발교육은 4.8%, 과제교육(생활개선)은 94.3%로 산출된다. 역시 전체 교육계획과 여성교육계획 가운데 여성의 능력개발교육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여성대상 별도 교육의 경우 전체 교육의 20~30% 정도의 비중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그 중 생활개선교육이 95% 정도를 차지하여, 기술교육은 여성교육 중 5% 정도, 전체의 1.2~1.5%에 불과하다. 생활개선교육 가운데도 기술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기술교육에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실제 여성의 영농기술교육 참여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성대상 기술교육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3) 영농기술교육사업의 성분석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p>-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생산력 증대,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가사활동과 관련된 생활개선교육이 주를 이루어 왔음. 정부의 여성정책 강화와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강조 정책으로 근래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교육, 경영교육, 영농기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기초 수준의 소수 교육에 머무르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대한 객관적 요구조사가 거의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요구와 남성농업인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었음. 즉, 남녀 상관없이 농촌생활 및 영농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교육을 기획하고 있었음. 단지 직관적으로 여성농업인은 가사, 자녀교육이나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필요로 하리라고 예측하고 교육을 기획하고 있음. 세부목표로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보조자 수준에서 주도자로 육성, 여성농업인의 신지식 농업기술 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여성 능력 배양,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식 향상으로 합리적인 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자로 육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의식 형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전문적 능력 함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미흡함.</p>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시의적절하며, 상위 농정방향에 부합하는가 : 전통적으로 농업교육에 있어서 생활개선교육, 문화교육, 여성조직 활성화교육 등은 여성대상 별도 과정으로 운영해 왔음. 그러나 영농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각종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농촌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전체 농업인의 절반이 여성이고 부부영농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기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시행해 온 생활개선과제 교육 중심에서 생활개선과제와 영농기술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환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함. 그리고 이는 여성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여성정책이나 농촌정책 등 상위 정책목표에 부합함.</p>

단계	분석기준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기 획</p>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p>	<p>-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여성농업인교육사업 및 생활개선사업과 같은 여성대상 교육의 경우는 교육시기, 기간, 인원, 예산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반 통합교육의 경우는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 예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성별 교육참여 인원이거나 예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함. 교육은 여성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사전에 인위적으로 성별 참여 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현재 교육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통합교육사업에서 여성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교육사업은 성 분석 차원에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움.</p> <p>-계획 수립시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계획수립시 여성단체 또는 여성농업인의 의견 수렴, 계통사무소(지역농협본부, 시·군 지부, 회원 조합) 여성복지 담당자, 지도계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수요 여성집단, 여성단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여성교육사업 기획 및 시행에 여성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고, 담당자의 경험과 직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여성대상 전문적 영농기술교육이나 농기계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행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농업인의 작업 참여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전문적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 제한적이고, 농기계 작동의 위험성 등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p>

단계	분석기준	분석
시행	성인지적 정책시행의 효율성	<p>-시행담당자가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성차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따라서 필요하면 여성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에 참여하면 되지, 별도로 여성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일반 영농기술교육이나 농기계교육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여성들이 교육받을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봄. 여성의 교육요구는 농작업보다는 가정관리, 취미교양,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영역에 있다고 보고, 생활개선과 교육에 이를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부가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 경영교육이 기획,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이 여성의 교육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임. 그러나 여성에게도 생산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p> <p>-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 과거에는 행정 조직을 통해 대상을 추천받아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강제적 참여로 의욕이 없는 폐단이 있어 공개 홍보 및 모집으로 전환하였음. 조직을 통한 연락의 경우는 남성이 우선시될 가능성도 있음.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홍보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므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여성이 특별히 배제된다고 보지 않음. 단, 일선에서 홍보시 영농기술교육이나 농기계교육의 주 대상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안할 수도 있음. 시행주체의 의도적인 차별은 없더라도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농촌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남성위주의 홍보나 교육참여 권유가 있을 수 있음. 즉, 농촌에서의 남성주도권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교육사업 내용이 잘 전달되더라도 여성은 가사, 자녀 양육, 가족의 제지 등으로 참여에 제약을 받음. 합숙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비우기 어렵고 남편이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갖기 쉬움.</p>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p>-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 단기간으로 기획되는 교육의 특성상 시행여건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장기적으로 농촌의 변화하는 여성 역할에 대응하는 교육사업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되며,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은 여성의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정관리적 교육에서 생산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있음. 일선 교육기관도 농림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여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나, 아직 전체 교육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함.</p>

단계	분석기준	분석
성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여성농업인 생활개선교육, 농기계교육, 영농기술교육, 경영교육 등을 통해 생활 및 문화활동 개선, 농기계 이용능력 향상, 영농기술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달성함. 농업인으로서의 생산적 역할 증대, 지역사회에서의 의사결정력 증대 등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봄.</p> <p>그러나 전체 기술 및 경영교육 중 여성농업인 참여의 비중이 매우 적고, 교육내용이 기초적 기술 수준이나 경영마인드 형성에 그쳐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봄.</p>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p>-해당 정책이 여성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 비록 제한된 수준의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경영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이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보조 역할에서 주도적 생산자의 역할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영농 및 경영에의 참여가능성이 증대되었음. 핵심 생산 작업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산 및 판매의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력, 참여권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기여한다고 봄.</p>

라.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사업

1) 사업의 여성관련성 및 여성의 요구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상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소의 현상이 빚어낸 결과로 여성의 정보사회에서의 비주류 역할의 고착가능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인 컴퓨터는 기술적 능력을 요하는 것이라는 사고와 여성은 기술에 약하다는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컴퓨터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이는 여성이 정보사회에서 비주류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활용율¹⁰⁾이 낮은(컴퓨터 보유가정 49.9%, 609명)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활용 실태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PC통신, 인터넷검색, 자료작성 및 저장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 낮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농업활동은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영농기술 정보나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정보산업분야에서 여성의 진출 장애요인은 정보산업분야에의 관심이 저조한 사회문화적 요인, 자긍심의 감소와 멘터와 역할모델의 결여, 물리적 안전문제, 성차별, 가사와 경력책임 조화의 애로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정보통신에 대한 두려움 제거 등을 통한 정보접근기회 확대, 모든 여성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보장, 여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여성정보교육훈련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간, 성별간 정보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급선무이다.

2) 농촌정보화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¹¹⁾

(1) 추진목표

10) 여성농업인의 저조한 컴퓨터 이용율이나 정보이용 격차는 농촌지역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 2000; 한얼경제사업연구원, 1999).

11) 농림부(2001.8.17),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에서 발췌한 것임.

농업·농촌정보화의 조기정착으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농촌정보화사업의 목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 정보화기반 확충은 농업정보화 확산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정보화사업의 기본방향은 우선, 정부 역할의 정립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연계 강화, 둘째, 정보화 대상 농업인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셋째, 디지털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조기 정착 추진, 넷째, 농업 농촌정보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정비이다.

(2) 농촌정보화 실태 및 문제점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정보망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은 전화국과 가입자(농가)간 공간적 거리가 멀어 데이터 통신상의 어려움과 함께 통신요금 부담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례로 전자상거래를 시도해보려는 신지식농업인이 통신사정이 나빠 사무실을 경북 칠곡에서 대구로 이전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농촌정보화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조로 농촌의 초고속 정보통신망(ADSL)을 구축하여 정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 PC보급(24%)이 국가전체(52%)의 절반수준이고 인터넷 이용율(7%)도 전체평균 37%에 크게 미달하는 등 여전히 농촌지역사회의 컴퓨터 이용 및 정보화수준은 도시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계획

▷ 농업·농촌 정보화기반 구축

- ◆ 농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
 - 초고속통신망을 조기에 확충하여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02년까지 모든 읍·면 지역에 초고속통신 서비스 제공
- ◆ 농업인 정보접근기회 확대 : PC보급 및 정보이용시설 확충
 - 농촌지역 PC보내기 운동을 본격 추진하여 농가 PC 보급율을 2005년

까지 50% 수준으로 확대

- 공동정보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인의 인터넷이용 활성화 도모
 - 2005년까지 농업관련기관에 300개소의 정보이용센터 확충
- ◆ 농업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화
-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이외의 정보전달 매체를 다양화
 -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무선 휴대용 단말기(PDA, IMT2000 등)
- 농업방송국 설립, 인터넷 방송 시작, 휴대용 단말기의 상용화
- ◆ 농업정보화 인력육성
-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보화인력(총 40만명) 육성
 - 정보화 전문인력(10만명) 육성 및 여성농업인 교육참여 확대(30%이상)
- 농업인의 정보화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인원 확대(40만명)
- 교육과정을 기초-중급-전문과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 사이버 농민대학 운영, 정보화선도자 발굴, 육성
- ◆ 농업농촌정보화 선도마을 육성
- 품목별, 마을 규모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향후 농업·농촌정보화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
- 정보화를 통해 수익 창출하는 다양한 농촌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정보화의 표준모델로 육성
- 마을정보센터 구축, 마을공동 홈페이지 구축

▷ 다양한 정보컨텐츠 확충

- ◆ 농산물 종합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농산물 생산·출하·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유통효율화 도모
 - 1단계: 2001 출하지원시스템 확대
 - 2단계: 2002-2003 종합유통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마늘, 양파)
 - 3단계: 2004년 이후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대상품목 확대
-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농업전문 컨텐츠 확충
 - 온라인 농산물 수출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수출농업 육성 지원
 - 농업기술정보 확충 및 사이버 컨설팅 지원으로 농가 경영지원

- 농산물 품질관리시스템 및 검역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농축산물공급
- 체계적인 농지와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GIS 활용체제 구축
- ◆ 농촌생활관련 정보확충
 - 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농촌지역 생활 및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 등 여가수요층과 농가를 연결하는 농촌관광·체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녹색관광 활성화 등 농외소득 증대 지원

▷ 디지털 유통활성화 기반 조성

- ◆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
 -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용 1만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2000년 1,400농가, 2001년 1,600농가, 2002년 1,600농가, 2003년 1,700농가, 2004년 3,700농가)
 -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홈페이지 농가를 향후 B2C, B2B 전자상거래의 중심 축으로 육성하여 전자상거래 조기 정착
 - 1만 농가 홈페이지 구축, 체계적인 교육 실시
- ◆ 농산물 전자직거래 및 사이버 도매시장 활성화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확대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
 - 2002년까지 전체 거래액의 5% 수준으로 확대(10배 확대)
 -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디지털 유통을 대폭 확대
 - 농산물 사이버 도매시장 표준화 지원 등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
 - B2C 전자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
 -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2002년부터)

3) 농촌정보화사업에 대한 성분적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p>-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 되었는가</p> <p>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있음. 농업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지대하며, 농업정보화를 위해서도 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이 중요한 정책근거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임. 세부목표로 정보화 농업인을 육성하는 계획에 여성농업인을 30%까지 육성토록 하고 있음. 이는 농촌여성 능력 배양을 통한 농촌의 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을 중요시 하기 때문임.</p> <p>세부목표는 농업정보화교육의 일반목표와 같음. 즉 "컴퓨터를 활용한 농업정보 이용능력 배양, 농업정보화 관련 교육의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및 제공, 교육관리 및 이수자 원격교육을 위한 웹 시스템 구축, 그리고 사이버 교육에 대비한 교육 콘텐츠 DB구축"임. 이는 여성농업인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p>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시의 적절하며, 상위 농정방향에 부합하는가</p> <p>사회변화 상황에 맞추어 농촌 여성의 정보화를 도모하는 것은 시의 적절함. 그리고 상위 국정지표에서 "지식경제강국구축"을 선언하고 있는 바, 이에 알맞는 능력을 갖춘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 농촌 여성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합함. 특히 영농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홍보함으로써 최신영농기술 습득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농촌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비 절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을 위한 정보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임. 농촌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농촌·농업환경의 개선은 시의 적절하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임.</p>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p>-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가</p> <p>충실하게 계획되었음.</p> <p>여성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가 편리한 현장위주의 교육과정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참여 인원목표도 설정하였음. 교육시기, 기간, 인원, 예산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반교육의 경우는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 예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2002년부터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임.</p>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획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p>-계획 수립시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음.</p> <p>계획수립시 사회여건을 고려하고, 여성단체 또는 여성농업인, 사무소(지역농협본부, 시·군 지부, 회원 조합) 여성복지담당자, 지도계 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하여 이루어졌음. 그러나 정책수요 여성집단, 여성단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심의기구 구성운영 실적은 없음. 여성정보화교육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신청자중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였음.</p>
시행	성인지적 정책시행의 효율성	<p>-시행담당자가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잘 이해하고 있음.</p> <p>여성정보화교육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여성들도 컴퓨터기술을 익히는 데 대한 신기함과 만족감이 의외로 커서 농촌여성들이 잘 적응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에서는 시간활용의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을 할 때에 시간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임. 그리고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일과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과 여성농업인들이 컴퓨터 습득속도가 느린 점 등이 문제임.</p> <p>-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 잘 전달되고 있음.</p> <p>여성정보화의 기초로서 여성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교육신청자중에서 여성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서 여성의 정보의식과 정보화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선적인 작업임.</p> <p>장애인, 노인, 농업인, 여성은 주요정보 비문해집단으로서 특히 농촌여성의 정보능력 향상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음. 최근에는 이동버스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등 여성정보교육에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음.</p> <p>-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 여성농업인의 정보격차는 도시여성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농업인을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여성들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설치할 예정임.</p>

단계	분석기준	분석
시행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p>농업인의 정보화 격차해소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한 농업상거래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내느냐가 중요함.</p> <p>여성들이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업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됨.</p>
성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달성되었음.</p> <p>당초 예상보다 여성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가 늘고 있으므로 연말 평가시에는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여성농업인 교육내용이 기초적 기술 수준에 그쳐 여성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촌의 여건도 향상되어야 함. 여성들이 컴퓨터기술을 익힘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에서 탈피하고 컴퓨터 조작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교육효과 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임.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전화세가 드는데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여성들에게 편리한 교육 방식이 개발, 도입되어야 하며, 영농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어 여성들의 참여가 증대되도록 유도해나가야 함.</p>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p>-해당 정책이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 그렇다고 생각됨.</p> <p>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컴퓨터 조작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활용으로 사회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역할변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특히 농업생산물에 대한 도시 소비자의 요구파악이 가능해지고,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인식됨으로써 여성의 인터넷기초 활용능력이 더 요구되고 있음.</p> <p>그리고 앞으로 여성만을 위한 학급을 구성하여 고급단계까지의 능력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음.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사회에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p> <p>그러나 현재는 기초단계의 컴퓨터 사용능력에 그치고 있으며, 농업인과 여성 특히 고령자의 정보격차율이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업부문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여성농업인 역할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낳고 있음.</p>

마.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사업

1) 사업의 여성 관련성 및 여성의 요구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은 성적 아이덴티티를 갖지 않는 농업경영체를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농업경영체 내에 속한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이나 사회적 활동 등의 측면에서 정책의 성인지성 여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의 여성 관련성은 가) 활발하지만 잘 인식되지 않는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나) 농업 경영활동 참여에 있어서 불균등한 기회부여 및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 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농업의 하위 부문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여성 농업노동력의 차별적 속성과 그에 관련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농업노동력의 꾸준한 감소 및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농업경영체 내 여성노동력 투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거의 절반을 여성농업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이 보다 더 성인지적인 목표와 계획을 지니고 접근할 때,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이나 삶의 질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법률적 대표자 여부를 떠나서, 최근에는 다양화된 농업경영활동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단순한 노동참여가 아닌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혹은 그러한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의 경영활동 참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로서, 법률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엄격한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을 보다 성인지적인 접근으로 전환시킬 때 여성농업인들의 경영활동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특정 부문의 농업활동(원예, 관광농업, 마케팅 활동, 서비스 제공 등) 영역에서는 보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여성 노동력의 개발과 활용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이 부문별로, 기능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노동력의 질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그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된다.

농촌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성별 역할분담 구조는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체계 내에서 농업경영활동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표출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 '표출된 요구(expressed need)'만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후반응적인(reactive) 정치과정은 농업에 대한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농업에 대한 사회적, 부문적 요구 변화가 농업경영체 내 여성 농업노동력을 다양하게 계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과 같이 경영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표출되지는 않더라도 '느끼는 요구(felt need)'에 대한 분석까지도 아우르는 사전대처적인(proactive) 정치과정 속에서 추진될 때, 시의적절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사업개요

이 사업은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경영체의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일관되게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책이다.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별, 기능별로 다양한 농업경영체 사업들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해 온 결과, 자금지원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정책자금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수혜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경직된 추진체제로 인해 농업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셋째, 대출취급기관과 대출 후 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해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방향성은 첫째,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둘째,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해 대출여부와 대출금액 등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고 자금대출 후 경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대출취급기관이 담당한다. 전문

적인 경영분석이나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한다. 셋째,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 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지원하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한다.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을 지원한다.

(2) 추진현황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이다.

대상 및 인원은 2000년 첫해 시범사업 단계의 총 자금지원건수 7,295건, 총 지원금액 1,605건으로 계획 대비 자금지원 실적은 100%이다.

2000년도 품목별 지원실적은 원예특작 분야 70.6%, 축산 29.4%, 기타(미작, 유통가공 등) 0.0%로 원예특작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1년 현재 계획중인 사업비는 국고용자 1,685억원, 대출기관 용자 420억원으로 합계 2,150억원이다.

<표 5-10>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실적(2000-2001. 7월)

단위: 건, 백만원

품목별	2000년				2001년 7월말		
	지원실적		구성비	지원실적		구성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예특작	과수	647	23,720	14.8%	150	15,315	22.3%
	채소	543	20,157	12.6%	126	8,256	12.0%
	화훼	231	8,467	5.3%	54	5,842	8.5%
	특작	5,421	60,921	38.0%	1,873	11,230	16.4%
	소계	6,842	113,265	70.6%	2,203	40,643	59.2%
축산	소	274	20,344	12.7%	199	13,070	19.0%
	돼지	131	20,131	12.5%	49	5,789	8.4%
	닭	30	4,679	2.9%	21	2,025	3.0%
	기타 축산	18	2,081	1.3%	23	6,096	8.9%
	소계	453	47,235	29.4%	292	26,980	39.3%
기타	미작	-	-	0.0%	36	914	1.3%
	유통 가공	-	-	0.0%	2	152	0.2%
	기타	-	-	0.0%	-	-	0.0%
	소계	-	-	0.0%	38	1,066	1.5%
합계	7,295	160,500	100.0%	2,533	68,689	100.0%	

현재 실시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시범사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 수준에서 적극적인 경영컨설팅을 전개하기 위한 협동조합 등 대출취급기관의 조직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컨설팅 팀과 9개도 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을 운영 중이나 부문별로 전문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대출취급기관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며, 대출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농협 시군 지부 등 중앙회 소속 각급 사무소, 농협 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축협, 품목별, 업종별 조합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하면, 취급사무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대출심사는 경영평점(50점 이상 대출가능)과 사업타당성 평가(3등급 이상 대출가능)를 통해 이루어진다.

3)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의 성분석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p>-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정책목적에 여성이 의식적으로 고려된 바 없음. 따라서 여성 관련 세부목표도 제시된 바 없음. 본 정책사업의 우선적 목적이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품목별,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정책자금을 통합하고 실무를 관장하는 지방의 취급사무소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 후 사후관리 및 경영컨설팅까지 일관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성적 아이덴티티를 갖지 않는 농업경영체이기 때문에 본 사업과 여성의 관련성이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인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정책목표 수립을 하지 않았음.</p>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시의적절하며, 전체 농정방향에 부합하는가 : 농산물의 '양에서 질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는 최근 농정 기조 변화 속에서 여성 농업노동력이 지닌 차별적 특성과 특정 부문(예: 원예, 관광농업)에서의 그 기능적 적합성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음.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여성 노동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으며, 농산물 가공이나 관광농업 등의 하위 부문에서는 법률적 지위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본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여성 관련 목표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사전대처적인 (proactive)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임. 가령, 농업경영체의 활동에 있어 여성의 요구가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문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문인지, 그리고 여성 농업노동력의 특성상 특화된 경영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대처적인 입장에서 성인지적 정책목표를 세우고 보완해야 할 필요 있음.</p>
	사업계획의 여성관련성	<p>-여성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별도의 추진방향이나 지원계획이 수립된 바 없음.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출현할 수 있는 여성 관련 정책목표를 적실하게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여성들의 요구를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 부터라도 최소한의 성별 분리된 통계, 성별로 구분된 정책 요구분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p> <p>-계획수립시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가 : 기획단계에 여성의 자문이나 참여는 없었음. 해당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를 확보하려는 시도도 없었음.</p>

시 행	성인지적 정책시행의 효율성	<p>- 시행담당자가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농가 구성원들의 성별 역할분업구조가 고착된 문화적 토양 위에서 본 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요구는 잘 표출되지 않고 있음. 지방의 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 담당자 또한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제반 조건들이 미흡한 실정임.</p> <p>- 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정보는 대출업무 취급기관인 지방 농협에서 주관하여 전달하며 지역의 행정 및 지도기관(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자금지원 신청에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서식 등에 대해 취급사무소(농협)과 유관기관에 비치, 안내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그 외에 취급사무소에 안내 유인물을 비치하고 농촌마을에 배포하는 등의 홍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속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홍보는 없음. 농업노동 외 경영체 외부와의 정보교류나 채무관련 의사결정이 대부분의 경우 농가가주이자 법률적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남성 농업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여 여성 농업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p>-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 전반적으로 시행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시범사업 기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여부', '친환경 농산물 표시 여부', '신지식인 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 '품질개선노력',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의 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이에 덧붙여 필요한 경우 여성농업인의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농식품가공 분야나 관광농업 분야의 농업경영체 출현이 점증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현실에서 해당 분야 사업계획 평가에 있어 농업경영체 내의 여성노동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성 과	여성관련정책 목표의 달성도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된 바 없음.</p>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p>-해당 정책이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농업경영주에 국한하고 있음. 법률적인 농업경영주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해당 사업은 먼저 여성농업인의 법률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지원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시설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의 세 가지로 분류됨. 시설자금은 농업경영체의 신규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농업경영체 내의 총 노동투하량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큼. 반면에 시설 개보수 자금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내 총 노동투하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경영체 내 남성 노동력과 여성 노동력의 노동투하량 증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정책사업이 능가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움.</p>

바. 농업생활개선 및 정주권 개발사업

1) 사업의 여성관련성 및 여성의 요구

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성격상 성관점이 도입되기는 어려우나 사업의 결과가 성관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2)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시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농어촌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중심생활권에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을 집중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 장기 사업목표로는 전국 1,226개면 중 오지(399)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64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구분 시행된다.

- 정주권 개발사업 사업내용

- 마을기반 정비: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촌지역 도로정비: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 등
- 농촌산업개발: 공동 영농어시설,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재해방지시설: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신축, 개량,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 정비

- 연도별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5-11>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백만원

구분		'92~'98	'99	2000	2001	2002년 이후
사업량(면수)						
- 보조사업		294	56	66	60	289
- 용자사업		320	11	13	15	406
사업비	계	1,439,234	206,859	261,717	277,800	1,330,609
	국고(양여금)	734,766	126,697	164,528	205,600	686,335
	지방비	307,171	54,291	70,511	51,400	282,593
	용자	397,297	25,889	26,680	20,800	361,681

자료: 농림부(2001), 2001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2001년도 정주권사업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을기반 정비사업에서 도로관련 사업으로는 마을내 도로는 전국에 282.7km를 설치하였으며, 농촌도로정비에서 마을간도로, 연결도로는 각각 51.8km, 153.12km를 설치하였음. 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농로로 272.89km를 설치하여 총 760.51km의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67,822백만원으로 총사업비 275,801백만원의 60.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

문화복지시설 설비현황으로 보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향토문화회관,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총 235개소의 21,80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사업비의 7.9%를 차지하고있음.

농촌주택정비사업으로는 주택의 특성상 성을 고려한 영역은 화장실, 부엌을 감안할 때 성을 고려한 설계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정주권개발 대상사업에서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농촌주택정비 사업이 성관점 분석의 사업대상이 됨.

<표 5-12> 2001년도 정주권사업 추진현황

시도 별	부문별	사업별	단위	사업량	사업비(금액:백만원)		
					계	보조	융자금
충 팔		계			275,801	255,001	20,800
	마을 기반정비	소계			98,907	98,907	0
		마을내도로	km	282.70	74,306	74,306	0
		상수도	개소	37.00	4,524	4,524	0
		하수도	km	90.70	20,077	20,077	0
		기타	식	0.00	0	0	0
	농촌 도로정비	소계			59,206	59,206	0
		마을간도로	km	51.80	12,650	12,650	0
		연결도로	km	153.12	37,790	37,790	0
		단독교량	개소	56.00	7,797	7,797	0
		버스승강장	개소	17.00	123	123	0
		버스정류장	개소	1.00	62	62	0
		공동주차장	개소	11.00	745	745	0
		연도포장	km	1.00	39	39	0
	기타	식	0.00	0	0	0	
	농촌 산업개발	소계			1,136	1,136	0
		농산물집하장	개소	1.00	70	70	0
		보관창고	동	12.00	1,066	1,066	0
	생산 기반정비	소계			43,775	43,775	0
		농로	km	272.89	43,076	43,076	0
		경지정리	ha	8.00	699	699	0
	문화 복지시설	소계			21,803	21,803	0
		복지회관	개소	15.00	3,215	3,125	0
		마을회관	개소	175.00	14,765	14,765	0
		공원	개소	29.00	3,250	3,250	0
		어린이놀이터	개소	5.00	253	253	0
		향토문화회관	개소	1.00	90	90	0
		휴게소	개소	1.00	20	20	0
		기타	식	9.00	210	210	0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소계			16,199	16,199	0
		저수지	개소	1.00	50	50	0
		관정	개소	2.00	250	250	0
		지역배수	km	72.50	14,667	14,667	0
	기타	식	14.00	1,232	1,232	0	
	환경보전 시설	소계			44	44	0
		오수처리시설	개소	1.00	44	44	0
		쓰레기처리시설	개소	0.00	0	0	0
	재해방지 시설	소계			9,257	9,257	0
		하천정비	km	33.00	8,305	8,305	0
		소방시설	개소	0.00	0	0	0
		기타안전시설	개소	11.00	952	952	0
	농촌주택 정비	소계		1,149.00	20,800	0	20,800
		주택신축	동	1,017.00	20,140	0	20,140
		주택개량	동	132.00	660	0	660
	기타	소계			4,674	4,674	0
		지역개발	개소	2.00	345	345	0
		면개발계획수립	개면	31.00	1,550	1,550	0
실시설계,부대비		식	19.00	2,779	2,779	0	

3) 농업생활개선 및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성분석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p>-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정책목표에는 여성이 의식적으로 고려된 바 없으며, 여성관련 세부목표도 제시된 바 없음. 도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이므로 여성이 고려되거나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왜냐하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수혜대상자는 주민 모두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이며, 그것은 공공의 편익과 수혜를 도모하고자 하는 인프라 구축이 목표이기 때문임. 주거환경정비나 문화복지시설의 설립에 있어서 관에서는 예산 지원만을 해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임. 원래 정책 목적에 여성이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문화복지시설의 설계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음. 예를 들어 시, 군에서 정책구상단계에서 마을 회관 설립에서 표준 설계안을 작성할 시, 할머니/할아버지의 방의 구조 및 요구를 고려하는 것, 건강관리실(찜질방, 목욕탕 등), 운동시설, 작업장 등의 설치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될 여지가 있음.</p>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시의적절하며, 상위 농정방향에 부합하는가: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고, 수혜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여성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여성정책이나 농촌정책 등 상위 정책목표에 직접적인 목표라고 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도로정비사업은 농촌정책,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인프라 구축의 사업이므로 상위 정책 목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p>
	사업계획의 여성관련성	<p>-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가 :농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1991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특히 도로 정비 사업은 2001년부터 계획 수립 후 시행된 사업임. 이것은 원래 단위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에게 초점을 맞춘 세부사업이 계획될 성격은 아님.</p>

단계	분석기준	분석지표
기 획	사업계획의 여성관련성	<p>-계획 수립시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기획단계에 여성의 자문이나 참여는 없었음. 공청회에도 여성들이 특별히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큼. 간혹 심의 위원회에 여성 농업인이 참여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여성을 위해 배려해 달라고 요청할 사안이 없었음. 해당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연령, 가구 구성수를 고려한 주민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지만 이를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는 필요가 없어 확보하지 않음. 문화마을, 복지회관의 설립시 여성농업인, 노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고려될 가능성이 큰 사업임.</p>
시 행	성인지적 시행의 효율성	<p>-시행담당자가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여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이 없으며,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없음. 따라서 정책 시행담당자가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p> <p>-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 사업의 특성이 기반시설 조성이므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음.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함. 기반시설이므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잘 인식하고 있음. 시군에서 농정심의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시킬 수는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 여성은 지역의 이장, 가족의 가장 의견을 따르는 편으로 여성의 관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고, 주장하지 않는 편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목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많음. 따라서 여성참여가 낮아 여성담당인력이 매우 적음.</p>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p>-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 정주권 심의 과정에서 여성이 두부공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예: 양주군, 2002년 사업계획).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반영이 안되었음. 이것은 성관점에 의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기 보다는 사업성, 경제성,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가 고려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성 관점과 사업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p>

단계	분석기준	분석지표
성과	여성관련 정책 목표의 달성도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기본적으로 정주권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여성관련 정책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 사업은 아님. 이러한 점에서 성관점은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이 간접적으로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p>
	성인지적 정책 효과성	<p>-해당 정책이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 그렇다고 봄. 도로확장, 마을회관설립, 주택개량 사업은 여성의 문화적, 교육적 수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됨. 즉 도로 확장사업은 기계화 영농을 용이하게 하므로, 여성의 생산활동을 증대시켰고, 자동차 문화는 여성 농업인이 문화적 활동, 교육 활동,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함.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 수입, 고용 등의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 및 처분권한이 증대되었음. 또한 보건, 교육, 보육, 정치 및 사회참여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이 증대되었음.</p> <p>시간적 여유가 있다보니 젊은 세대들이 자녀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향이 증가함.</p> <p>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이 주목적인 사업에서 이농을 막고,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사업임. 결과적으로 성별이 감안되지 않는 사업이나 성역할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음. 기반시설 조성과 마을회관 사업으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위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제공하므로 수혜여성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p>

사. 농가도우미 사업

1) 사업의 여성관련성 및 여성의 요구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하여 농업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경우 여성들을 대신하여 농업노동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촌사회는 영농의 규모화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노동력의 부족으로 가족 노동력이 없이는 영농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다. 경제개발과 산업화는 농어촌의 젊은 인력을 도시부문으로 흡입하면서 농촌사회의 대가족제도가 약화되어 핵가족화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모자라는 농가일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계화 및 시설농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농을 수행하는 가구원이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가경제에 많은 차질이 야기되고 있다.

농업노동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넘고 있다. 농가의 주요한 노동력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농업관리에 차질이 생기거나, 적기방제, 적기시비, 적기수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축산분야, 시설영농분야 등은 적기에 사료투여, 관수, 환기 등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여성농업인의 생산활동 중단은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은 여성농업인은 물론 농가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은 출산전후 자신을 대신할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충분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농사일로 복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하는 현실을 안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따라서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업경영인 또는 그 가족의 유고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출산을 전후한 농가의 영농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모성보호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여성농업인력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농촌정착의지가 고취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은퇴농업경영인 및 농촌지역의 고령여성노동력의 고용재창출 효과도 있다.

2)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사업개요 및 사업토대 마련: 1998년 ~ 1999년

농가도우미제도는 1998년에 발의되어 1999년부터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9개 시범지역은 1도당 1개 시·군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각 도지사가 선정하였고,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도 여주, 강원도 홍천, 충북 괴산, 충남 천안,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북 경주, 경남 진주, 제주 북제주 등이었다. 시범지역은 (i)출산 및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많고 농업여건이 열악한 지역 (ii)과거 5년간의 평균 농가수 50%, 출산이 가능한 20-49세의 여성농업인수 30%, 평균 농가어린이 출생수 20%의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농촌지역 농가도우미사업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시군별 약 140명으로 추산되었다. 시·군 평균어린이 출생수는 한 해에 태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24,312명을 전국의 시·군부 163개로 나눈 결과 약 140명으로 추정된다(시군당 평균어린이 출생수: 24,312명 ÷ 163개 시군 = 약 140명).<표 5-13>

<표 5-13> 농촌지역 농가 및 어린이 출생수

'98 농가수	농가 인구	'98 농가 여성인구	'98농가 인구중 20-49세 여성수	농가어린이 출생수	비 고
1413 천호	4400 천명	2271 천명 (51.6%)	680 천명	24 천명	◦ 농가어린이 출생수 ('95농업총조사) - 0~4세 농가인구 : 121,563명 - 121,563÷5=24,312명 - 58농가당 1명 출생

의견 수렴과정에서 농가도우미 사업의 시행주체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거론되었으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요구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되었다. 수혜기일은 모성보호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60일이 제기되었으나 예산형편과 수혜폭을 고려하여 수혜기일을 30일로 조정하였고, 국고보조율은 농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가 제기되었으나 행정상의 복잡성과 서류 증명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동일액 지급방식으로 결정되었다.

(2) 본격적인 사업추진기: 2000년 이후

10개 시도, 68개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산전 또는 산후 여성농업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로 추진하였다. 농가도우미 이용일수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60일, 출산후 60일 기간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 휴가에 기준하여 산정된 것이다.

농가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50%로 결정하였다. 농가도우미 1일 8시간 이용료는 공공근로사업 단가 중 단순노동 기준 적용하여 24,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인건비 19,000, 간식비 및 교통비 5,000), 농가도우미 이용료 국고지원은 하루 12,000원(전체 액수의 50%)으로, 30일 사용시 360,000원 지원하게 된다.

2000년도 사업결과 지역별로 농가도우미 이용율이 상이했는데 전남지역이 91.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울산과 충북지역이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지원액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지 않았고 사업추진 저조로 초기 사업목표의 약 50% 수준의 성과를 나타냈다.

농가도우미 이용시 개인 농가 부담(50%)이 많아 농가에서 도우미 이용을 기피하였는데, 이는 농촌여성노임(평균 32,000원)에 비해 국비지원액이 매우 낮아 실제 농가부담이 높아지고 저소득 출산농가는 기피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농한기 출산, 쌀 전업농, 영세농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농가도우미 이용 및 영농대행일지는 10일 간격 또는 수시(불시)로 근로상황을 점검해야 하나 업무과중 등으로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표 5-14>

<표 5-14> 2000년도 사업추진 실적(2000. 12. 31. 현재)

도별	시범지역 (시군수)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진도율 (B/A)	
		계획량 (명)	예산 (천원)	계약건수 (명)	금액 (천원)	계획량	금액
경기	15	154	55,440	104	36,288	67.5 %	65.5 %
강원	10	182	65,520	48	17,067	26.4 %	26.0 %
충북	4	72	25,920	36	12,696	50.0 %	49.0 %
충남	5	279	100,440	56	19,548	20.1 %	19.5 %
전북	5	175	63,000	78	27,261	44.6 %	43.3 %
전남	8	142	51,120	131	46,785	92.3 %	91.5 %
경북	7	195	70,200	91	31,611	46.7 %	45.0 %
경남	9	251	90,360	133	47,535	53.0 %	52.6 %
제주	4	192	69,120	51	17,309	26.6 %	25.0 %
울산	1	22	7,880	3	1,080	13.6 %	13.7 %
합계	68	1,664	599,000	731	257,180	43.9 %	42.9 %

농업인 단체와 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2001년도 재조정된 농가도우미사업은 (i)농가도우미 이용료의 산정기준을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로 적용하기 보다는 농촌지역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인상 (ii)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50% -> 80% (iii)농가도우미 사업지역 확대: 68개 -> 87개 <표 5-15> (iv)지원 및 이용절차, 서류작성 등의 간소화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농가 도우미이용계약서',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간소화 및 일원화 (v)출산농가 대상 홍보강화와 읍·면·동별로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87개 시군에 1개 시군당 500부 배포) (vi)농가도우미 등록 및 관리 등을 통한 안정적 확보 (vii)사업시행 공무원대상 교육강화: 연 2회에 걸친 전국 규모의 교육 및 직접방문 등 이전 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보완되었다.

향후 이 사업은 전국지역으로 확대(87개 지역 → 163개 시·군 지역)되고 확대했을 경우 연간 총 3,200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을 중심으로 한 농가도우미를 벗어나 농기계 부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영농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도 농가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대는 물론 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내 생산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5> 2001년도 농가도우미 사업 시행 지역

시도	시군	2001년 사업지역 (시군)	
		2000년 시범지역	2001년 신규지역
계(11)	87	68개 시군	22개시군(3개시군 교체)
경기	16	평택, 이천, 안성, 여주, 화성, 광주, 남양주, 포천, 김포, 용인, 파주, 양평, 양주, 연천, 가평(15)	고양(1)
강원	10	천천, 원주, 홍천, 정선, 인제, 강릉 삼척, 횡성, 평창, 영월(10)	양구(1) ※ 영월 교체
충북	6	청원, 영동, 괴산, 음성(4)	청주, 충주, 옥천(3) ※ 괴산 교체
충남	8	천안, 금산, 부여, 서천, 예산(5)	보령, 아산, 서산, 당진(4) ※ 서천 교체
전북	7	남원, 장수, 정읍, 진안, 고창(5)	완주, 순창(2)
전남	11	여수, 순천, 나주,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신안(8)	화순, 영암, 영광(3)
경북	13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상주, 성주(7)	안동, 영주, 문경, 영덕, 봉화, 의성(6)
경남	10	진주, 통영, 밀양, 거제, 하동, 합천, 함안, 창녕, 김해(9)	거창(1)
제주	4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4)	-
울산	1	울주(1)	-
인천	1	-	강화(1)

<표 5-16> 200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선
사업시행절차	<p>○도우미 이용농가 - 신청서 제출 후 이용계약서 체결 ○작업시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작업후 영농일지를 읍면동에 제출 ○읍면동 관계공무원은 도우미작업상황 수시(불시)로 확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도우미이용농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신청서 제출 • 이용계약서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 통 장</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신청계약서</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계약서 확인 • 시군에 계약사실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군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계약서 확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비집행></p> <p style="text-align: center;">도우미이용농가</p> <p style="text-align: center;">영농일지 작성</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일지 확인 • 국고지원금 신청 ※ 수시로 작업상황 점검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일지 등 관련서류 • 지원금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에 입금 (지급) </div> </div>	<p>○이용계약서(계약서:서식 앞뒤면)작성제출 ○작업후 영농일지(지원금신청서:서식 앞뒷면)를 읍면동에 제출 ○이용신청서(계약서) 및 영농일지(지원금신청서) - 원금은 시군보관, 읍면동은 사본보관 ○읍면동 관계공무원은 도우미작업상황을 1회 이상 현지점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도우미이용농가</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신청서(계약서) 작성제출 ※ 서식앞뒷면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 통 장</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신청서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계약서) 확인 • 시군에 제출 (원본은 시군에 사본은 읍면보관)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군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계약서) 확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비집행></p> <p style="text-align: center;">도우미이용농가</p> <p style="text-align: center;">영농일지 (지원금신청서) 작성제출 ※ 서식앞뒷면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일지 (지원금신청서) 접수 • 시장군수에게 원본제출 • 사업완료보고서제출 ※ 1회이상 현지점검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일지 등 관련서류 사실여부 확인 • 지원금을 도우미 이용농가에 입금(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p> <p style="text-align: center;">입금사실 농가에통보</p> </div> </div>
	지원액	<p>• 1일(8시간) 12,000원씩 30일동안 지원 - 도우미이용단가는 농가와 도우미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지급액은 1일 12,000원 ※ 1인당 36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p>
사업비정산	<p>• 시장군수는 익년도 3.15일까지 정산보고</p>	<p>• 시장군수는 익년도 1.15일까지 정산보고</p>
기타		<p>• 사업추진상황 매월 5일한 제출(서식7)</p>

3) 농가도우미사업의 성분석

단계	분석기준	분석
기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p>-정책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농가도우미사업은 목적에 여성이 고려되고 여성관련 세부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농가도우미사업은 20-40대에 걸친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사일의 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기획되었음. 또한 출산 전 60일과 출산 후 60일의 기간동안에 30일을 정하여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농업인이 영농일의 부담을 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모성보호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음.</p>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시의적절하며, 전체 농정방향에 부합하는가 : 농업 및 농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젊은 여성농업인력을 차세대 농업생산인력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농정목표와 부합됨. 농가도우미 이용을 통한 생산활동의 지속성 확보와 건강한 노동력 재창출과 같은 목표설정은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위 국정지표에도 부합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음.</p>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p>-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여성농업인 모성보호를 위해 농가도우미 사용기간을 출산 전후 각각 60일로 정하게 하고 이중 30일에 대해 국고보조를 하였음. 또한 후계영농인력으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였음.</p> <p>-계획 수립시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농가도우미 시행여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음. 여성단체나 농업인 조직의 의견을 수렴함. 1999년 기초시범사업을 거쳤고 연도별 확대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규모로 확대하고 있음.</p>

단계	분석기준	분석
시행	성인지적 정책시행의 효율성	<p>-시행담당자가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시행단계 상에서 농가도우미를 집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사업취지와 목적 등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있었음.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농가도우미제도는 여러 가지 사업수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규모가 적은 사업이어서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남성이어서 임신한 여성농업인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p> <p>-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 농가도우미에 대한 정보나 자원은 중앙정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주관하에 시·군·읍면지부 단위로 전달되고 있음.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농가도우미 홍보지를 시·군부 행정조직을 통하여(시군당 1,000매) 읍면단위 사무소에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중앙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에도(단체당 2,000매) 배부하였음. 구체적인 읍면단위 사무소에서는 마을의 이장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자체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의 농가도우미에 대한 열의 정도나 개인적 성향 등으로 對주민 홍보 정도나 효과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p>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p>-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 IMF 구조조정 이후 읍면단위 사무소나 행정기관의 공무원 인력은 30% 정도 감소되면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사업이 평균 5-7개로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 된 현실.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지과 관련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체 인력은 충원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한계를 가짐.</p>

단계	분석기준	분석
성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p>-여성관련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농가도우미사업은 자녀를 출산하는 젊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업생산성을 유지시키게 하면서 모성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복지정책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였음. 또한 농가도우미제도 시행 시·군부 지역의전국적 확대나 국가지원액의 증가로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생산활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 및 가계 경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되는 바, 여성의 생산자로서의 위상 강화와 세력화라는 여성관련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고 보여짐.</p> <p>그러나 지난 20-30년간 농업생산과 과중한 노동으로 오십견,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고연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고령 여성농업인이 만성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질환도우미나 사고도우미 등 다양한 형태의 도우미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p>-해당 정책이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 영농에 대한 부담감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그러나 농가도우미 사업을 단순히 품앗이의 연장으로 보거나 인력을 저렴하게 얻는 가계소득 보전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여성의 지위나 권한이 강화되는 임파워먼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임.</p> <p>전통적으로 여성이 산후조리도 없이 일을 해야 하거나, 농사일에 참여해도 여성의 기여도가 보이지 않아 왔던 농촌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농가도우미 제도의 도입은 여성의 생산활동에의 기여도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촌에서의 여성의 생산자로서의 지위향상은 물론 가구 및 지역사회 내 여성의 전체적인 권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p>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각종 농업정책 성분식 결과 및 평가

<표 6-1> 성분식 결과 및 평가

		농촌 인력 육성 사업	정보화 사업	영농 기술 교육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사업	농업생활 개선 및 정주권 개발 사업	농가 도우미 제도
기 획	여성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됨	○					○
	여성의 요구가 약간 반영됨		○	○			
	여성의 요구가 거의 반영안됨				○	○	
시 행	시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충분함	○					○
	시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약간 있음		○	○			
	시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음				○	○	
성 과	여성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함	○				○	○
	여성지위 향상에 약간 기여함		○	○			
	여성지위 향상에 거의 기여 못함				○		
총 평	매우 성인지적 정책임	○					○
	약간 성인지적 정책임		○	○			
	성인지적 정책이 아님						
	성중립적인 정책임				○	○	

나. 요약 및 정책제언

1) 성주류화 관련 용어의 정리

(1) WID

그 동안 여성은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실에 중점을 두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활동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을 발달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발전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나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비롯된다. WID관점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초점을 두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사례는 여성을 위한 특정사업으로 가족계획, 여성할당제, 편부모 세대 지원,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 보호, 여성 보건관리, 출산휴가, 영양, 식수, 여성통계, 여성교육, 여성노동, 여성소득 창출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여성전담 국가기구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2) GAD

GAD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비교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의 접근방법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이 변화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변화시켜 간다. GAD개념에 입각한 접근법의 초점은 전략적·실천적 측면에 그 초점을 두고 양성간의 권력, 의사결정, 업무분담, 주체성, 자원 통제성을 파악하는 것 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결국 여성, 남성, 아동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주류화(Mainstreaming)

주류화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정책의 주류에 통합시켜 다루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주류화는 '여성 주류화(Mainstreaming Women)'와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로 접근이 가능하다. '여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주류화'란 의사결정에 여성의 대표성과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각기 다른 성 역할로 인해 여성은 의사결정에 참여해오지 않았으므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조정을 한다.

2) 분야별 정책의 성 분석 요약 및 정책제언

(1) 후계농업인 육성

① 정책의 성 분석 요약

<표 6-2>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의 성 분석

농촌인력육성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 목표를 명확히 설정함 : 2001년부터 여성에게 유리한 기준적용, 배정인원의 20% 범위내 여성 우선선정, 정책목표 시의적절함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 세부사업 충실히 계획됨 : 여성의 배점기준 하향조정, 여성농업인 단체의견 수 렴함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 2001년도 여성농업인 선정 인원 미흡함 : 전체신청인원수의 감소와 함께 여성신청자수가 1999 년과 2001년 사이 절반으로 축소됨, 선정비율은 여성 이 남성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음, 담당공무원 동사업 의 목적을 잘 이해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 전통적 농업형태에 국한됨 : 농촌관광 등 여성농업인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 보다 는 주로 전형적인 농업형태에 한정된 경향임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 여성농업인 후계자 선정비율 감소됨 : 1999년이후 후계농업인 신청건수가 감소하였음, 선정 비율은 남성의 경우 1999 ~ 2001년 사이 44-48%이고, 여성은 51-5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 농촌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농협 등 농민단체에서의 여성의 발언 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음

② 정책제언 요약

<표 6-3>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제언

농촌인력육성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 설정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여성 농업인을 우대하고 있음 - 대상 선정비율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 여성후계농업인 선정목표를 설정해 양적으로 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시행결과에 대한 성별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속화 요망됨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시설이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생산영역이어서 기획의도와는 달리 시행계획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음 - 향후 여성농업인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망됨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 여성농업인들이 창업의욕을 보이고 있는 농산물가공 분야와 관광분야가 지원대상사업분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 여성 우선 선정비율을 정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여성선정비율이 다시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음 -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원인분석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구학적 파악 요함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 여성후계농업인의 확대로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고있으며, 특히 농협 등 농민조직에서의 여성의 발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판단됨

③ 정책제언

제반 정책의 시행이나 정책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여성 우선 선정비율 지정과 성별 통계 작성으로 여성농업인의 수혜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후계농업인 선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선발평가기준의 완화와 여성 우선 선정과 같은 여성농업계의 요구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한편, 목표관리가 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화가 진행중인 농업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1년부터 여성의 배정인원을 20%범위내에서 우선 선정을 하는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또한 WTO 체제, 정보화 등의 경제재체제의 개편과 새로운 기술의 획득이 필수적인 현시점에서 정책목표 또한 시의적이다. 따라서 제반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정책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여성 우선 선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시행결과에 대한 성별 통계를 작성하여 여성의 수혜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들이 후계농업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사업대상과 지원시설 등의 내용을 개정해(예를들면 식품가공 및 녹색광고 분야 포함)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후계농업인 지원대상 사업분야와 지원시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해온 생산영역(경종농업의 경우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이며 축산의 경우 한우, 낙농, 양돈, 양계)에 국한됨으로써 전통식품 등 농산물 가공부문과 관광농원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의욕을 가지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선발기준 완화와 함께 여성 우선 선정 시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여성 선발비율이 2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수용이 안되었던 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여성농업인들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가공 및 녹색관광분야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후계농업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사업대상과 지원시설 등의 내용을 개정해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후계농업인 선정과 관리를 농촌지역에서의 농업활동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시설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정책비교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후계농업인의 확대는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농협 등 농민조직에서의 여성의 발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영농기술교육

① 정책의 성분서 요약

<표 6-3> 영농기술교육-정책의 성분서

영농기술교육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 주체자로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목표 설정됨 : 현실적으로 생활개선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기술교육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음, 현재는 기초수준의 소수교육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영농기술교육에의 여성참여는 저조함, 정책목표 시의적절함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 여성대상 세부사업은 충실히 계획 : 여성농업인 교육정책은 충실히 수립되어 기관들의 여성대상 교육계획에 반영됨, 그러나 일반교육의 경우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여성의 요구조사 및 자문에 기반한 계획이 미약함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 여성의 요구와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에 대한 인식은 약간 미약 : 여성대상 영농기술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교육시 성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 교육생 모집시 여성이 배제되지 않으나 정보접근이나 교육참여에 있어 남성이 중심이 될 수 있음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 여성의 변화하는 역할에 대응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여성의 생산참여와 역할변화에 대응할 교육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됨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교육 등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역할 증대 및 의사결정력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기술교육에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매우 적고 교육내용이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 여성농업인의 주도적 생산자로서의 역할 전환 계기가 될 수 있음 -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권, 참여권리가 증대될 가능성이 큼 - 결과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기여함

② 정책제언요약

<표 6-4> 영농기술교육-정책제언

영농기술교육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 기술과 경영교육을 통한 여성의 생산적 역할과 기능 강화를 목적에 명시할 것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 일반교육의 경우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함 - 여성의 자문을 구해 여성의 교육요구를 반영하도록 해 야 함 - 여성대상 교육 중 기술교육 비중을 확대할 필요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 교육생 모집시 여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나 교육참여의 권유가 필요함 - 전체 기술 및 경영교육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 여성친화적 교육환경의 조성 필요 - 교육담당자 및 강사의 성인지성 제고 필요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 장기적으로 여성의 역할변화에 대응할 교육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됨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 일반 기술교육과 경영교육에의 여성참가율 및 만족도 조사 필요 - 교육후 기술 활용도에 대한 조사 필요 - 관련된 후속 교육요구 조사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 학습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수지도, 후속 현장지도가 필요 - 의식교육과 기술교육의 병행으로 여성농업인의 주체의 식 및 능력 함양 필요 - 학습의 지속을 위해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조직 및 일 반학습단체에의 여성 참여 격려

③ 정책제언

농업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시, 여성의 현재 요구 및 미래지향적 요
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활개선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기술교육으로 방향전환
을 하고 있다. 현재 여성대상 영농기술교육은 기초수준의 소수교육에 국한
되어 있고, 일반 영농기술교육에의 여성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
업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시, 여성의 현재 요구 및 미래지향적 요구

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성의 농작업 참여 증대에 다른 영농기술 교육은 물론,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역할 증대와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자는 여성의 참여가 활발한 선진 농업국가에 대한 정보, 농업 및 여성 전문가의 자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요구 파악 등을 통해 교육기획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관들의 여성대상 교육계획에 비교적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교육의 경우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여성의 요구조사 및 자문에 기반을 둔 계획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대상 교육의 전문교육화와 함께, 일반전문교육에의 여성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활개선 교육사업과 일반교육에서 여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경영교육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 교육사업에서도 여성대상 참여 목표와 사업비를 분리 계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영농기술교육 및 경영교육에 여성참여를 제고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대상 영농기술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교육시 성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교육생 모집시 여성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정보접근이나 교육참여에 있어 남성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대상교육은 대체로 기초교육에 국한되므로, 중급이상의 통합교육에 여성을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농업인으로부터의 선진 기술 전수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교육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교육의 경우, 성인지적 강사의 확보와 여성친화적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여성들이 소외되고 탈락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교육정보 제공으로 접근성 증대, 교육시기와 시간편성대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모듈화, 원격교육, 방문교육, 탁아서비스, 가족단위프로그램 편성 등 여성의 교육참여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학습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기술 활용도에 대한 조사 추수지도, 후속 현장지도가 필요하며, 의식교육과 기술교육의 병행으로 여성농업인의 주체의식 및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권, 참여권리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주도적 생산자로서의 역할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기술교육과 경영교육에의 여성참가율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고 여성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후 기술 활용정도와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후속 교육요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학습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수지도, 후속 현장지도가 필요하며, 의식교육과 기술교육의 병행으로 여성농업인의 주체의식 및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의 계속을 위해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조직 및 일반학습단체에의 여성 참여가 격려되어야 한다.

중앙부서는 물론 중앙 및 일선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부서는 물론 중앙 및 일선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획과 시행과정에서 성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수궁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담당자들이 교육기획과 시행과정에서 성 분석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3) 농업정보화

① 정책의 성분석 요약

<표 6-6> 정보화사업-정책의 성분석

정보화 사업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 명확히 설정 : 정책목적에 여성고려하고 있고, 정보화 사업에 여성농업 인을 30%까지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음, 농촌노동력 감 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비 절감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정책목표가 시의 적절함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 여성관련 세부사업 충실히 계획 : 현장위주 교육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교육 계획함, 2002년부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사업실시 예정, 여성농업인 및 여성단체, 여성복지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 : 여성선발 우선, 여성을 위한 현장위주방문교육 실시, 여 성을 위한 교육 별도 운영계획, 정보나 자원이 여성에게 잘 전달되고 있음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여성만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예정, 해결과제는 여성이 흥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획과 시행이 요 구됨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 달성되었음 : 초과달성되었으나 인터넷 상거래 등 전문성 향상을 위 해 많은 교육이 필요, 해결과제는 컴퓨터 조작능력에 대 한 자신감, 인터넷 사용의 비용절감 방안 마련, 여성들에 게 편리한 교육방식, 영농의사결정시스템에의 여성참여 증가 등 유도 필요.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 농촌여성의 평등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역할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짐 : 법률에 의한 정보격차해소 대상이 여성, 농업인, 고 연 령인자 인바, 여성농업인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임, 해 결과제로 여성의 과학기술에의 접근기회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탈피방안 모색, 컴퓨터 능력습득 가능연령의 한계 로 인한 교육시간의 연장 필요

② 정책제언 요약

<표 6-7> 정보화사업-정책제언

정보화 사업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사업에 여성농업인을 30%까지 배정, 육성토록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나, 정보격차 해소 대상을 보면, 농업인, 여성, 노인임. 이를 볼 때, 여성농업인은 3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이므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여성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함. 또한 현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계획 및 예산책정에 있어서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을 비롯하여 여성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되,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을 위한 현장 위주 방문교육을 실시하되, 일과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해야 할 것임 - 여성을 위한 교육실시 시 별도운영을 해야 할 것임 - 여성농업인이 전자상거래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능력배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흥미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획과 시행 요망 - 여성의 지위 및 권한향상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여성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조사 필요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여성정보화 사업만족도 조사 및 홍보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인터넷 상거래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교육이 필요계획 제시 필요 - 가정 및 사회에서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상황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필요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밝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능력 향상과 더불어 남녀평등의식향상 도모 - 미래사회 적응능력 배양이 성 주류화의 진일보 방안이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토록 함

③ 정책제언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여성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정보접근기회의 장애요인을 보면, 과학기술 발달과정의 문제, 농촌지역에서 문화소외현상이 빚어지는 특성으로 인한 문제, 인식의 성차로 인한 접근기회의 부족, 여성농업인의 수동성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문제, 비동기성의 배제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경우에는 경제능력과 시간의 부족, 컴퓨터 사용상의 기술적 어려움, 운영체제나 정보 내용에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 등이 사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추가된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이 컴퓨터 활용기회를 확대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되고 있는 사회로부터 점차 소외되는 계층으로 남게 된다.

여성들의 수동성은 교육의 결과이다. 가정, 학교교육은 여성들이 순종적, 소극적, 비 탐구적, 감정적, 비지적일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성차별적 교육의 결과로 여성들의 수동성은 당연시되었다. 이는 컴퓨터, 인터넷 접근 기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의 문화소외현상으로 인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사업의 기획은 정보화 정책의 의제 설정, 기획, 시행, 평가의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여건을 고려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수렴된 결과에 터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격차 대상인 농업인, 여성, 노인이 모두 포함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갖는 한계는 폭넓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촌에서의 주류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증가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여성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계획 및 예산책정에 있어서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성정보화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특히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정보접근센터를 설립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훈련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접근기회 확대와 정보화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운영에서 여성선발을 우선하고 있고 여성을 이한 현장위주의 방문교육을 실시, 여성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접근성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접근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정체를 형성토록 해야 한다.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주부들이 정보사회에서 비전과 리더십을 지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부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여성농업인 정보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정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정보교육 시행 근거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들의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능력 활용기회 확대와 여성발전, 사회발전을 강구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주류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보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성정보화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특히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장 위주 방문교육 실시, 일과시간 등을 고려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정보접근기회 확대방안,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훈련체제 구축과 더불어 농업활동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여성이 흥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획과 시행요망되며, 여성의 지위 및 권한향상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여성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황파악 및 요구조사가 필요하다.

여성정보화 사업만족도 조사 및 홍보방안 모색, 인터넷 상거래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한 정보격차해소 대상이 여성, 농업인, 고 연령인자 인바, 여성농업인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정보활동 활성화

화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많은 여성농업인 관련 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여성농업인 관련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공동라인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공공정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조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정보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사냥대회, 사이버백일장, 여성농업인 관련 사이트 안내서 제작, 홍보, 여성농업인 정보의 날을 제정한다.

넷째, 정보화 정책결정직에 대한 여성농업인참여증진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여성농업인들간의 정보와 의견 교환 채널 구축하고, 여성농업인 리더쉽 교육에서 여성농업인의 정보접근 프로그램 개발한다.

여성관련 정책목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여성정보화 사업만족도 조사 및 홍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교육이 필요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가정 및 사회에서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상황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농촌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밝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능력향상과 더불어 남녀평등의식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미래사회 적응능력 배양이 성주류화의 진일보 방안이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토록 한다.

(3) 농가경영종합자금

① 정책의 성 분석 요약

<표 6-8> 농가경영종합자금-정책의 성 분석

농가경영종합자금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려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 자금 지원체계의 효율성제고가 목표임 - 농업경영체 대다수가 남성이며, 여성농업경영주도 남성 경영주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함 - 여성노동력 참여증대 경향과 특정 부문에서의 여성농업 노동력의 기능적 적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들에 초점을 맞춘 세부사업을 계획되지 않음 - 여성의 자문이나 참여는 없었음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와의 정보교류, 채무관계 역할은 대부분 경영체 내 남성농업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 농업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려는 노력 부재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초기인 탓에 사업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예; 농식품가공, 혹은 관광농업분야)에서 나타날 개연성이 큰 여성농업인들의 차별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관련 정책 목표가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된 바 없음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법률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그러나 법률적으로 농업경영주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실질적 경영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증가하고 있음 : 사업의 실시로 인해 경영체 내 노동 및 자원 등의 측면에서 성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② 정책제언요약

<표 6-9> 농가경영종합자금-정책제언

농가경영종합자금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동력 참여증대, 여성노동력의 특성에 대한 관심 증대 경향을 인식하고, 사전대처적인 입장에서 성인지적 정책 목표수립을 위한 준비 요망 - 본 사업과 관련된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분석 필요 - 농업경영체 내 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법률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함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영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요망 - 하위부문별로 여성농업노동력의 특성과 적합성에 대한 연구 요망 -여성의 자문 활발하도록 유도 요망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외부와의 정보교환과 채무관계 의사결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지원 요망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예; 농식품가공, 혹은 관광농업분야)에서 취급사무소 단위에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사업 관련 성분리된 통계 등 성인지적인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필요함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관련 정책 목표가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되도록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주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실질적 경영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경영자금신청 자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③ 정책제언

여성노동력 참여증대, 여성노동력의 특성에 대한 관심 증대 경향을 인식하고, 사전대처적인 입장에서 성인지적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한 준비나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농가경영종합자금 지원책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려되는 사업이 아니며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의 효율성제고가 목표이다. 이는 농업경영체 대다수가 남성이며, 여성농업경영주도 남성경영주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성노동력 참여증대 경향과 특정 부문에서의 여성농업노동력의 기능적 적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노동력 참여증대, 여성노동력의 특성에 대한 관심 증대 경향을 인식하고, 사전대처적인 입장에서 성인지적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한 준비가 요망된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분석 필요하며, 농업경영체 내 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법률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정보교환과 채무 관계 의사결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지원이 요망되며 여성농업인의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외부와의 정보교류, 채무관계 역할은 대부분 경영체 내 남성농업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으며, 시범사업 초기인 탓에 사업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예; 농식품가공, 혹은 관광농업분야)에서 나타날 개연성이 큰 여성 농업인들의 차별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정보교환과 채무 관계 의사결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예; 농식품가공, 혹은 관광농업분야)에서 취급사무소 단위에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요망되며 경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농촌가족의 노령화, 여성화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률적으로 농업경영주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실질적 경영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경영자 금신청 자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에서 여성농업인의 법률적 지위

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농업경영주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실질적 경영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가족의 노령화, 여성화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률적으로 농업경영주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실질적 경영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경영자금신청 자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농촌생활정주권사업

① 정책의 성분서 요약

<표 6-10> 농업생활개선 및 정주권 개발사업-정책의 성분서

농업생활개선 및 정주권개발사업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려되는 사업이 아님 : 그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이 예산 지원이지만, 설계시 남녀를 고려함, 상위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어려움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 여성농업인에게 초점을 맞춘 세부사업이 계획될 성 격이 아님 : 여성이 특별히 배려될 사업은 아님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 여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은 없음 : 사업의 특성상 그 결과를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음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 여성들이 사업을 이해 공장설립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업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대처할 사업임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 여성관련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한 사업이 아님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 간접적으로 여성의 지위,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침 : 여성의 문화적, 교육적 수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됨 - 기계화영농, 자동차 문화 발달: 여성 의식향상에 기여

② 정책제언 요약

<표 6-11> 농업생활개선 및 정주권 개발사업-정책제언

농업생활개선 및 정주권 개발사업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려되는 사업이 아니지만 주거환경정비사업(혹은 환경관련사업)시 남녀를 고려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요망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 복지회관 등 여성이 주 사용자가 되는 사업인 경우 여성의 관점을 고려해 볼 것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 문화마을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시 여성의 요구, 필요성, 의견수렴을 통해 여성의 관점 모색 요망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 농업생활개선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이 후속적으로 시행하게 될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포함되도록 고려요망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 농촌생활개선 및 정주권 개발사업이 여성의 생활과 맺는 연관성에 대해 공무원대상의 교육 요망 - 농촌생활개선 및 정주권 개발사업의 여성특수 요구에 대한 욕구조사 요망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 이 사업이 간접적으로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적극적 홍보 요망

③ 정책제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목적이 예산 지원에 있지만, 설계시 남녀를 고려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주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려되는 사업이 아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목적이 예산 지원에 있지만, 설계시 남녀를 고려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회관 건립, 문화마을 단지 조성 등 여성이 주 사용자가 되는 경우 여성의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화마을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시 여성의 요구, 필요성, 의견수렴을 통해 여성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관점은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립될 가능성이 크므로 문화마을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시 여성의 요구, 필요성, 의견수렴을 통해 여성의 관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주권 사업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접적으로 여성의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권 사업은 여성의 문화적, 교육적 수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었다. 기계화영농, 자동차 문화 발달이 여성의 의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 지위 및 권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6) 농가도우미제도

① 정책의 성 분석 요약

<표 6-12> 농가도우미제도-정책의 성 분석

농가도우미제도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자체가 여성을 위한 사업임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농업인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젊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 증가로 농촌사회정착에 기여하는 바 농촌인력확보라는 농업정책목표에 부합됨으로 시의 적절함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충실히 계획 : 농가도우미 사용기간을 출산전후 각각 60일로 정하고, 이중 30일에 대해 국고 보조, 전국규모로 확대, 지원규모 상향조정함 - 여성농업인 단체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차 이용율 증가 : 초기 홍보부족, 인식상의 문제로 이용율 저조하였으나 국고지원량 증가로(2001년 80%) 이용 증가추세임 -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주관하에 홍보 강화 - 시행 공무원 교육강화와 직접방문을 통하여 정착화 시도함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공무원의 필요성 제기 : 농가도우미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공무원 부재한 실정임 - 대부분 농지과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는데 업무과부하로 농가도우미사업이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음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되었음 : 젊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건강증진의 목표는 달성됨 - 2000년까지는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하지는 못했고 이에 대한 사후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보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도모로 여성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러나 현재 여성의 생산자로서의 지위향상이나 가구 및 지역사회 내 권한 강화에는 미치지 못함

② 정책제언 요약

<표 6-13> 농가도우미제도-정책제언

농가도우미제도		
기 획	정책목표의 성인지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범위 확대로 혜택을 받는 여성농업인의 수적 비중 증가 방안 마련 - 농가도우미 필요성에 대한 남성농업인과의 공감대 방안 마련 - 농가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영농일 이외에도 가사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세부사업 계획의 여성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도우미제도가 여성농업인 개인 및 가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홍보할 방안 마련 - 행정단위 체계별(시도 읍면단위별) 적정한 농가도우미 필요농가 추정할 것
시 행	성인지적 관점 시행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으로 농가도우미 범주의 효과성 측정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농가도우미 이용율을 제고시킬 것
	성인지적 정책시행 대응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 - 농촌 지역 보건소 및 여성농업인센타와의 유기적인 연관체계 구축 - 농촌지역 각종 여성대상 정책사업 수행할 공무원 지위 마련
성 과	여성관련 정책목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노령화와 복지 욕구 다양화로 인한 농가도우미 사업범위의 확대 요망 (예: 질병도우미, 상해도우미, 특수분야 도우미 등) - 중·노년의 여성농업인의 복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으며 사고(부상포함)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성인지적 정책의 효과성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넘어서 지위향상 혹은 권한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

③ 정책제언

사업범위의 확대로 혜택을 받는 여성농업인 수혜대상 확대하며 농가도우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농업인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젊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 증가로 농촌사회정착에 기여하는 바 농촌인력확보라는 농업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년 현재 농가도우미 사업은 전국 163개 시·군 중 87개 시·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 지역에서 농가도우미제도가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어 여성농업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농가도우미에 대한 국고 지원율이 상향조정되었으나(현재 80%) 저소득층 농가는 20%의 자부담금 때문에 여전히 농가도우미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도우미 신청기간 (출산 또는 예정일 기준 출산전 6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120일 기간중)이 짧고 농한기에 출산한 여성은 수혜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산 전 후 각각 9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가도우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수혜자 여성농업인, 정책실행 공무원조직, 농가도우미 등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첫째, 농촌여성의 고령화로 인해 출산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으로 농가도우미 범주의 효과성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가도우미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공무원 부재한 실정이며, 대부분 농지과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는데 업무과부하로 농가도우미사업이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농정관련 업무를 보는 남자직원이 농가도우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임신한 젊은 부인을 상대로 사업홍보, 참여유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바, 여성복지정책과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특화시키고 담당할 공무원 직위를 새로이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사관련 일(단, 농사일에 따른 식사준비

는 예외임) 자체에 대해서만 농가도우미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신청 농가에서 출산 후 산모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농가도우미는 간병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사업 자체가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용 가능한 30일 중 10일 정도는 산모간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은 계약기간(30일)이 만료된 다음날 통장 입금 지급토록 되어 있다. 실제 농가도우미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므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10일 혹은 15일 간격) 집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대부분의 농가도우미는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로 충원되어 단순한 작업에만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적인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풀(pool)이나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전문농가도우미를 원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에 인력을 충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가도우미가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전체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2000년까지는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사후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보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홍보는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농가도우미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對국민 홍보가 함께 진행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원대상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수혜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연령별 분포가 50-54세가 11.2%, 55-59세가 17.1%, 60세 이상 38.8%로 50세 이상이 전체여성농업인의 3/4을 넘어서고 있는 농촌특성상 농가도우미 수혜 대상범위를 출산은 물론 육아, 질병, 부상 및 세대주의 사망, 경조사로 확대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다. 농림부 사업수행시 성주류화 전략 이행을 위한 지침

<표 6-14> 성주류화 전략 이행을 위한 지침

항목	분석지표	분석지침	성인지적 정책 추진지침	
기 획	문 질 점 정	여성관련성	사업기획시 해당 사업이 여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사업기획시 여성관련성을 미리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시오
		성별 요구	해당 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요구 차이를 조사해서 반영하시오
		여성의 자문	사업기획을 위한 자문회의에 여성이 참여하였는가	수혜대상 여성 및 여성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오
		성분리 통계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남녀별로 분리된 정보(통계)가 있는가	사업기획시 성별 분리 통계를 추출해서 참고하시오
		성인지적 목표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었는가	사업 목표 가운데 성인지적 목표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시오
		성별 영향	이 사업이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는가	사업의 성별 영향을 예측, 고려하시오
	추 진 방 향	성별 추진방향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추진방향이 별도로 제시되었는가	전체 사업 가운데 여성대상 추진방향을 별도로 제시하시오
		근거법령의 법적근거	해당 사업에 여성관련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가	근거법령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시오
		연 도 별 지 원 회 담	성별 지원계획	여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사업량, 사업비)이 수립되어 있는가
	대상여성 비율		정책수혜대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해 놓았는가	정책수혜대상자 중 적정 여성참여 비율을 결정하시오
	성별 예산 편성		남녀별로 구분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성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시오
	사 개 수 립	심의기구에 여성참여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는가	심의기구에 여성참여 비중을 확대하시오
		지원영역 선정시 여성고려	분야별 지원영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참여 비중이 높은 분야가 배제된 경우는 있는가	지원영역 선정시 여성참여 비중이 높은 분야를 고려하시오
		수혜대상 기준 설정의 성별고려	수혜자 대상 기준 설정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였는가	수혜대상 기준 설정시 여성을 고려하시오
	시 행	추 진 계 계	담당자의 성인지성	사업시행담당자는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여성담당자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성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업시행과정에 가능하면 여성담당자를 포함시키시오
사업내용의 전달			사업내용이 수혜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	사업내용을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하시오
시 행 사 항 모 니 터 링		모니터링	사업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이 있는가	시행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하시오
		모니터링 결과 반영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시행과정에 참조, 반영되었는가	모니터링 결과를 시행에 적절히 반영하시오
		성별 예산집행	성별 예산집행이 있는 경우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성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시오
평 가	사 업 의 성 영 향 평 가	목표달성도	해당 사업에서 설정한 여성관련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여성관련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파악하시오
		여성지위 향상 기여도	해당 사업이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 및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가	사업이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시오
	결 과 수 령 및 활 용	수혜 여성의 만족도	수혜여성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가	수혜 여성의 반응을 조사하시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사업시행후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시오
	미반영된 여성 요구	해당 사업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여성의 요구가 있는가	미충족된 여성의 요구는 후속 사업에서 반영하도록 하시오	

라. 성분석 수행방법 및 절차

1) 분석대상 정책 및 사업선정

① 성 분석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시오.

2) 분석지표 및 분석지 수정

② 본 연구가 제시한 성 분석 지표를 분석대상 사업에 적절한 상태로 조정하시오(용어의 변경, 분석 항목과 지표의 추가, 삭제 등).

③ 본 연구가 제시한 성 분석지를 조정된 지표에 맞춰 수정하시오.

3) 조사진행

④ 분석팀을 구성하시오. 가능하면 사업담당자, 여성정책 담당자 또는 전문가, 외부 연구자가 다각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함.

⑤ 분석지를 분석대상 사업의 담당자에게 보내 분석을 의뢰하시오. 다른 분석팀도 분석지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시오.

⑥ 분석지 각 항목에 답하기 위해 문헌 및 자료 조사, 성별 통계 활용, 농촌여성 및 여성단체, 전문가의 자문, 대상 여성 및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시오. 특히, 성별 통계 활용과 여성의 자문은 필수적임. 분석지표 1-1(사업의 여성관련성), 1-2(성별 요구 고려)는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가장 중요함.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해당 사업이 여성과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1 과 1-2 분석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면담, 요구조사, 여성계의 의견 등을 반드시 조사해서 참고해야 함.

4) 결과정리 및 해석

⑦ 분석지 항목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성 분석 결과정리표의 지침에 따라 결과를 정리하시오.

⑧ 최종적으로 정책의 성인지성을 평가하시오.

5) 결과활용

⑨ 사업이 기획단계 이전 또는 기획단계이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성인지적 방향으로 조정하시오.

⑩ 사업이 시행단계에 있으면, 가능한 선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시행과정의 성인지성을 강화하시오.

⑪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면, 해당 사업에 대한 성 분석 결과를 후속 사업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시오.

마. 농림부 각종정책의 성인지성 평가 지침

<표 6-15> 정책의 성인지성 평가 척도¹²⁾

정성 지표	척도
1. 사업기획시 해당 사업이 여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①거의 그렇지않다②대체로 그렇지않다③대체로 그렇다④매우 그렇다
2. 해당 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①-----②-----③-----④
3. 사업기획을 위한 자문회의에 여성이 참여했는가	①-----②-----③-----④
4. 해당사업과 관련되어 남녀별로 분리된 정보(통계)가 있는가	①-----②-----③-----④
5. 사업의 성인지적 목표가 명시적으로 기술됐는가	①-----②-----③-----④
6. 이 사업이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는가	①-----②-----③-----④
7.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추진방향이 별도로 제시되었는가	①-----②-----③-----④
8. 해당사업에 여성관련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가	①-----②-----③-----④
9. 여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사업량, 사업비)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②-----③-----④
10. 정책수혜 대상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해 놓았는가	①-----②-----③-----④
11. 남녀별로 구분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①-----②-----③-----④
12.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는가	①-----②-----③-----④
13. 분야별 지원영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참여 비중이 높은 분야가 배제된 경우는 있는가	①-----②-----③-----④
14. 수혜대상 기준설정예 여성,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였는가	①-----②-----③-----④
15. 사업시행담당자는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①-----②-----③-----④
16.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성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①-----②-----③-----④
17. 사업내용이 수혜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는가	①-----②-----③-----④
18. 사업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이 있는가	①-----②-----③-----④
19.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시행과정에 참조, 반영되었는가	①-----②-----③-----④
20. 성별 예산집행이 있는 경우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①-----②-----③-----④
21. 해당사업에서 설정한 여성관련목표가 달성되었는가	①-----②-----③-----④
22. 해당사업이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 및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가	①-----②-----③-----④
23. 수혜 여성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가	①-----②-----③-----④

12) 이 평가 척도는 김재인 외(2001), 「성 관점의 정책분석 모형」을 참고했음

- **사용 목적:** 정책 담당자 또는 성 분석 담당자가 각 정성지표의 해당 척도에 체크함으로써 정책의 성인지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평가 척도임. 어느 정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정책의 성인지성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객관적 준거로 사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성인지성 평가 방법:** (각 정성지표의 척도 점수를 모두 합산) ÷ 23 = M(평균 점수)

3.5 ≤ M ≤ 4 충분히 성인지적인 정책임(여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임)
 3 ≤ M < 3.5 대체로 성인지적인 정책임(대체로 여성을 고려한 정책임)
 2 ≤ M < 3 대체로 성인지적이지 않은 정책임(대체로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임)
 M < 2 거의 성인지적이지 않은 정책임(여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정책임)

바. 성분석 도입 및 확산방안

본 연구에서는 농림 정책 및 사업을 성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농업인 정책 개발 및 집행시 성(gender) 요인이 어떻게 고려되었는가를 실제로 분석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정책들은 남성농업인을 기준으로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수적 비중이 매우 적은 현실이다. 농업 분야에서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의 고려를 넘어 자원의 분배와 생산 등과 관련된 모든 농업인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성 분석은 바로 모든 정책에서 성(gender)의 범주, 특히 여성의 요구와 입장이 적절히 고려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도구이자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 분석 모형은 정책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성분석 모형¹³⁾을 기초로 농업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단계, 분석항목

13) 김재인·박성정·정경아·정윤수(2001)의 『성관점의 정책분석 모형 개발』은 모든 정책에 성관점을 적용할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및 지표를 추가, 조정하였다. 분석항목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2001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사업항목들을 반영하였으며, 농림사업 분석에 적절한 성 분석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이 지표들을 토대로 시범적으로 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농업정책에 대한 일반 정책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성(gender)과 관련된 사항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해당 정책의 성 형평성 및 성 평등성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농림부 모든 정책을 성 관점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 분석이 농림부 모든 정책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성 분석 수행을 제도화하는 법제 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의 제반 농림사업 평가 업무에 성 분석이 포함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림정책 기획단계에서 반드시 여성관련성과 여성농업인의 주력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농림부 사업지침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둘째, 성 분석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모든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성 분석의 필요성과 의미를 인식시키고, 분석방법을 익히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성 분석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우려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담당자들이 물성적인 정책을 성 평등한 정책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접근하라는 요구에 대해 당혹감과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gender)을 고려하는 작업이 향후 농촌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정책의 성분분석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이후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성분분석 적용과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사전과제이므로, 공무원 교육과정에 성 분석 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들이 성 분석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농업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모형이지만, 각각의 농림사업 및 정책에 적용할 때는 현장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실제 분석에 더 적합한 상태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 분석 도구의 적절성, 타당성, 사용 용이성 등을 제고하는 조정 작업은 농림정책에 대한 성 분석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넷째, 성 분석 수행에 대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은 성 분석의 정

책내 수용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성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정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여 그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여러 부서에 자극을 주고, 그 성과를 홍보해야 한다.

여섯째, 성 분석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성 분석이 성 평등한 농림정책 개발에 실제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모든 부처 가운데 선구적으로 수행된 농림부 성 분석 작업의 의의는 매우 크며, 이러한 시도가 농림부는 물론 다른 정부 부처에도 확산됨으로써,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이 양성에게 모두 공평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여성 농업인들의 삶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 분석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영자·정양숙·이민진·양승주(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명수·박경효 공저(1996), 「정부업무 심사평가기능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정책학회.
- 김명수·박준 공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복규(1999), “한국여성의 현실과 여성정책,” 「여성정책연구」 제2집, 대구: 대구광역시.
- 김선옥 외(1996), 「북경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선옥(1996),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서울: 박영률 출판사.
- 김영옥·김이선(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3개마을 사례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2000), “여성과 인터넷 활용-주부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우리사회」, 서울: 사회이론학회.
- 김재인(2000), “주부와 정보사회,” 「정보격차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서울: 한국전산원.
- 김재인·김성경(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정해숙·김원홍·김영옥·김영희·장혜경·김이선(1998), 「현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새정부의 단기 여성정책 추진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박성정·정경아·정운수(2001), 「성관점의 정책분석모형」,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자 외(1997), 「여성과학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과학재단.
- 김정자(1998), “사회정책분석모델에 관한 연구-여성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홍·문유경(1999), 「남녀고용평등지표 개발」, 서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 김현희·최문경(2000), “정보사회와 젠더-과학, 기술, 그리고 컴퓨터-,” 「제17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학회, pp. 70-103.
- 김화준(1999),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노화준(1999),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박성복·이종열(1993), 『정책학원론』, 서울: 대영문화사.
- 박영미(1994), “계층분석 절차에 의한 행정정보 시스템 내부 통제 요소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변화순 외(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오현석(1994), “농업에 대한 학술적, 법률적 개념의 비교,” 「21세기 농정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 오현석(1998), “프랑스 농업구조정책의 전개와 98년 농업기본법 개정안의 함축,” 「농정포럼 월례세미나 시리즈」 62호.
- 유홍립(1999), “양성평등한 정보사회를 위한 권력관계 분석과 정책적 제안,” 「정보화저널」 제6권 제4호, 서울: 한국전산원.

- 윤금순(1997), “여성농민 정책의 평가와 모색,”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한국여성농민연구소주최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자료집.
- 이진주 외(1998),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서울: 나남출판사.
- 이혜경·신영화(2000), 「보건복지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지침」, 보건복지부.
- 장필화(1990a),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제7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pp.11-21.
- 장하진(1998), “여성정책의 발전적 방향 및 전망,” 「새 정부의 여성정책」 공개대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pp.71-90.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전영사.
- 전정숙(1994), 「농촌유형별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 형(1999), 「사회변동과정에서의 여성정책 위상과 의미」, 서울: 한국여성학회.
- 차의환(1999),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 한인수·임선희·정범구(1998), 「정보통신 여성인력의 현황조사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 _____ (1997), 「농촌여성의 당면과제와 전망」, 농정연구포럼.
- _____ (1990b), “여성정책과 공사영역,”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편, 「90년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치논단 제2호, 서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pp.57-67.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1999),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기관별 보고서(I,II)」.
- 국제문제조사연구소(1997), 「21세기 국가발전과 여성의 역할」.
- 규제개혁위원회(1999), 「규제영향분석사례연구」.
- 농림부 인터넷 사이트 www.maf.go.kr
- 농림부(2000),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9),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농림부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역(1999).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안내」, *Council of Europe. Gender Mainstreaming: Conceptual framework, methodology, and presentation of good practice.* 보건복지부.
-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1998), 「지역사회발전과 여성농민의 역할」, 서울: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민연구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 정무장관(제2)실(1995), 「여성정책의 추진실적 및 계획」, 서울: 정무장관(제2)실.
- 정보통신부 정책기획과(2000),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을 통해 지식정보강국 만든다,” 서울: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정책기획과(2000), “주부인터넷교육 추진현황,”(내부자료) 서울: 정보통신부.
- 한국교육개발원(1999),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인정보문해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농림부.
- 한국여성농민연구소(1997),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서울: 한국여성농업인중앙협의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농민연구소.
- 한국여성단체연합(1997a),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토론회」,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1997b), 「'97 15대 대선 3당 여성정책 비교/평가」,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의전화연합(1998), 「여성복지시설의 평가지표개발 연구 발표회」 자료집.
- 한국여성학회(1999), 「신정부여성정책의 현황」 제6차 워크샵 자료집.
- 한국전산원(1999), 「국가정보화백서」, 용인: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주부 인터넷 교육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역(1999), 「공무원을 위한 여성정책 결정 가이드」, *Status of Women Canada. Gender based analysis*. 서울: 행정자치부.
- Carley, M.I.(1981),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 GEORGE ALLEN&UNWIN.
- Chapman P. & Lloyd S. (eds.)(1996), "Women and Access in Rural Areas", Avebury. *Women in Farming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in Asia and Pacific: Report of an APO Seminar(27th Sep.-7th Oct., 1994, Japan)* Tokyo: Asian Productivity.
- Davis, M. W.(1988), "Women Clerical Workers and the Typewriter: the Writing Machine," Cheris Kramarae(ed.), *Technology and Women's Voice: Keeping in Touch*, Routled & Keganpaul Publishing Co.
- Eurostat (EU)(2001), *the Spotlight on Women*, Belgium, juin.
- Fieldstein H.S. & Jiggins J. (eds.)(1994), *Tools for the Field: Methodologies Handbooks for Gender Analysis in Agriculture*, Kumarian Press.
- Gurumurthy, A.(1998). *Women's rights and status*. UNDP.
- Hacker, S. L.(1982), "The Culture of Engineering: Woman, Workplace and Machine." Joan Rothschild(ed.), *Women, Technology and Innovation*, Pergamon Press.
- Haskins, R. & James J. G. (eds.)(1981), *Models for Analysis of Social Policy*, Norwood, New Jersey :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Henderson, H. K.(ed.1995), *Gender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Surveying the Field*, Tucson: Univ. of Arizona Pr.
- ILO(1982), *Rural Development and Women in Asia*, Geneva: ILO.

- Jones, C. (1985), *Patterns of Social Policy :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Analysis*, London &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 Maman M. & Tate T.H.(1996), *Women in Agriculture: A Guide to Research*, Garland Publications.
- Marriam, S. B. & Caffarella, R. S.(1991),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Miller, C. & Razavi, S.(1998). *Gender analysis: alternative paradigms*. UNDP.
- Miller, D.C.(1977),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New York and London : LONGMAN.
- Ministry of Women's Affairs(Netherlands)(1997), *Gender Analysis*.
- Moser, C. O. N.(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O'Hara(1998), *Partners in Production: Women, Farm and Family in Ireland*, Berghahn Books.
- Parker A.R(1993), *Another Point of View: A manual on gender analysis training for grassroots workers*, UNIFEM.
- Poats S.V., Schmink M., & Spring A. (eds.)(1988), *Gender Issues in Farming System Research and Extens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 Raj-Hashin R. & Heyzer M. (1989), *Gender Sensitivity in Development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Report of APDC Sub-Regional Workshop.
- Rao, A., Anderson, M. B. & Overholt, C. A.s(1991)(eds), *Gender Analysis in Development planning*, Connecticut: McNaughton & Gunn.
- Satty T.L. & Kearns. K.P.(1991),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s*, New York: Pergamon Press.
- Smith, J.(1983), "Women and Appropriate Technology: A Feminist Assessment," Zimmer(ed.), *The Technological Woman: Interfacing with Tomorrow*, Jan. Praeger Pub.
- Status of Women Canada(1996), *Gender-Based Analysis : A Guide for Policy-Making*. Ottawa: Staigh Associates Limited.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2000),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Role of Women in Agriculture*, sept., Dublin, Ireland.
- UN(1998),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UNDP(2001). *Learning & information pack: gender analysis*.

Whitelegg, L.(1992), "Girls in Science Education: Of Rice and Fruit Trees," *In Inventing Women: Science, Technology and Gender*, edited by Gill Kirkup & Laurie Smith Keller, Polity Press.

Women's Unit Cabinet Office(UK)(1999), *Policy Appraisal for Equal Treatment*.

_____(1996), Le Ministere de l'Agriculture, de la Foret, et de la Peche, Le statut des conjoints d'exploitations et autres membres de la famille associes aux travaux d'exploitation, Paris, fev.

[별첨 1] 성분석 농업정책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자료집

농림부 자문회의

- ▷연구명 :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석'
- ▷연구자 :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박성정(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송다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오현석(지역아카데미 대표)
- ▷일 시 : 5월 17일 오후 2시
- ▷장 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회의실

1. 연구개요 및 목적

1)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석」은 농림부에서 발주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연구 과제중의 하나로 한국여성개발원의 주관하에 2001년 4월~2001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

2)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성분석(Gender-based Analysis)은 각종 농업정책을 분석하여 성(gender)요인이 삽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는데 기본 취지가 있음. 농업정책을 포함한 모든 사회정책이 성별로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제제기가 된 바가 없었으나, 1995년 이후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실제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성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되면서 각종 정책에 성관점을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해지고 있음.

3) 본 연구에서는 각종 농업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나 내용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고려해보고자 한다.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분석은 크게 계획단계(planning), 집행단계(implementation), 사후결과 단계(effect/result)로 나누어 조명해볼 예정이다.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농업정책의 분류

1)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농정목표만을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전무한 실정. 근래에 들어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으나(ex.여성농업인 육성정책 5개년 계획), 일반 농업정책 분야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임.

2)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개입된 농업정책과 그렇지 않은 농업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성인지적 관점의 농업정책은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농정목표에 반영됐거나, 정책수행과정에서 농업정책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정책들이 해당됨.

3)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차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농업정책들로 유형화함.

- **positive** : 세부정책의 목표가 여성농업인의 요구나 정책수행에 따른 영향 등을 반영하는 등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된 농업정책

- **neutral** : 세부정책목표나 정책 요구도가 性別로 차별성이 없거나 무관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

- **negative** : 정책목표나 내용이 여성농업인의 요구 또는 정책수행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농업정책. 특히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여성농업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농업정책.

3. 분석대상 농업정책의 선정배경과 항목

1) 선정배경 :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농림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농업정책들을 정책목표별로 분류하고, 각 농업정책이 정책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성인지적 관점의 개입여부와 여성농업인의 노동조건과 생활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정책들을 잠정안으로 선정했음.

2) 분석대상 농업정책 항목(잠정안) : 인력의 배치와 자료의 수집정도에 따른 가능성 검토요.

① 농촌인력육성

② 농업경영자금육성 및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융자지원

- ③ 농기계 개발 및 자동화촉진
- ④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 ⑤ 정보화 촉진
- ⑥ 농산물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 산업육성
- ⑦ 농가도우미제도
- ⑧ 농촌생활환경 및 정주권 개발

*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부터 시의성과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경청할 부분입니다. 많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응용사례

농업정책의 목표	세부정책	성인지적 관점		
		positive	neutral	negative
신지식인 농업인 및 첨단기술 의 산업화	① 농촌인력육성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 육성	✓		
	-경영혁신 종합지원			✓
	-농업법인 경영체의 육성			✓
	② 농업경영자금육성 및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융자지원			✓
	③ 농기계 개발 및 자동화 촉진			✓
	-농기계지원 공급			✓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
	-밭작물 및 축산분야의 기계화 촉진			✓
	-여성용 농기계의 개발보급	✓		
농업 · 농촌 정보화 기반 구축	④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
	-첨단기술개발 사업			✓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사업화 촉진			✓
	-GM종자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	
	-품종보호제도의 강화		✓	
	⑤ 정보화 촉진			
	-농촌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
	-농업을 재도약 시키는 지식경영·지식 농업 정착			✓
	-농업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농정 기반			✓
	⑥ 농산물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 산업육성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
	-분야별 소득안전망 구축 계획			✓
	⑦ 농가도우미제도			
	-농촌의 교육·의료 등 복지지원강화	✓		
	-여성농업인의 역할제고 및 권익신장	✓		
	⑧ 농촌생활환경 및 정주권	✓		

4. 분석가능성 판단항목

- 1) 전체적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혹은 용이)한가와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있는가는 빠짐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2) 계획, 집행, 결과 단계별로 자료수집이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람.
- 3) 기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람.
- 4) 성별분리통계나 내용이 있는 경우는 ○,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X,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람.
- 5) 각종 정책관련 민원사항 등록일지 등을 찾아볼 수 있는가: 정책대상자의 반응 및 만족도.
- 6) 각각의 자료는 최근 2-3년 것은 모두 기록해 주시기 바람. 단 10년 이상된 정책은 시행 첫해, 중간연도 2-3년간, 최근 1-2년간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람.

'농촌인력육성정책' 분석자료Checklist

단계	항 목	존재 여부	수집 가능성 여부	성별리가능 여부	비고	연락처 (성명/전화번호)
계 획	시행계획서 자문단의견서 실태기초통계 수혜자대상 수혜지역 예산 계획서 기타 관련자료				전문가/농민 지역 (도별, 군별 등)	
집 행	집행/실행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세부지침변경서 참여대상 참여지역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지역 (도별, 군별 등)	
결 과	결과/평가보고서 예산분배표 만족도 조사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연도/분기/월별 농민/전문가	

'농업경영자금육성 및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융자지원 정책'
분석자료 Checklist

단계	항 목	존재 여부	수집 가능성 여부	성별 가능 여부	비고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계 획	시행계획서 자문단의견서 실행기초통계 수혜자대상 수혜지역 예산 계획서 기타 관련자료				전문가/농민 지역 (도별, 군별 등)	
집 행	집행/실행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세부지침변경서 참여대상 참여지역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지역 (도별, 군별 등)	
결 과	결과/평가보고서 예산분배표 만족도 조사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연도/분기/월별 농민/전문가	

'농촌생활환경 및 정주권 개발 정책' 분석자료 Checklist

단계	항 목	존재 여부	수집 가능성 여부	성별리능 여부	비고	연락처 (성명/전화번호)
계 획	시행계획서 자문단의견서 실태기초통계 수혜자대상 수혜지역 예산 계획서 기타 관련자료				전문가/농민 지역 (도별, 군별 등)	
집 행	집행/실행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세부지침변경서 참여대상 참여지역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지역 (도별, 군별 등)	
결 과	결과/평가보고서 예산분배표 만족도 조사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연도/분기/월별 농민/전문가	

'정보화 촉진 정책' 분석자료 Checklist

단계	항 목	존재 여부	수집 가능성 여부	성별 리 가능 여부	비고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계 획	시행계획서 자문단의견서 실태기초통계 수혜자대상 수혜지역 예산 계획서 기타 관련자료				전문가/농민 지역 (도별, 군별 등)	
집 행	집행/실행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세부지침변경서 참여대상 참여지역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지역 (도별, 군별 등)	
결 과	결과/평가보고서 예산분배표 만족도 조사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연도/분기/월별 농민/전문가	

'농기계 개발 및 자동화 촉진 정책' 분석자료 Checklist

단계	항 목	존재 여부	수집 가능성 여부	성별 리 가능 여부	비고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계 획	시행계획서 자문단의견서 실태기초통계 수혜자대상 수혜지역 예산 계획서 기타 관련자료				전문가/농민 지역 (도별, 군별 등)	
집 행	집행/실행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세부지침변경서 참여대상 참여지역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지역 (도별, 군별 등)	
결 과	결과/평가보고서 예산분배표 만족도 조사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연도/분기/월별 농민/전문가	

'농산물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 산업육성' 분석자료 Checklist

단계	항 목	존재 여부	수집 가능성 여부	성별 리 가능 여부	비고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계 획	시행계획서 자문단의견서 실태기초통계 수혜자대상 수혜지역 예산 계획서 기타 관련자료				전문가/농민 지역 (도별, 군별 등)	
집 행	집행/실행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세부지침변경서 참여대상 참여지역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지역 (도별, 군별 등)	
결 과	결과/평가보고서 예산분배표 만족도 조사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연도/분기/월별 농민/전문가	

'농가도우미 제도' 분석자료 Checklist

단계	항 목	존재 여부	수집 가능성 여부	성별리능 여부	비고	연락처 (성명/전화번호)
계 획	시행계획서 자문단의견서 실태기초통계 수혜자대상 수혜지역 예산 계획서 기타 관련자료				전문가/농민 지역 (도별, 군별 등)	
집 행	집행/실행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세부지침변경서 참여대상 참여지역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지역 (도별, 군별 등)	
결 과	결과/평가보고서 예산분배표 만족도 조사 민원사항 기타 관련자료				연도/분기/월별 농민/전문가	

[부록] 농업정책의 성분석을 위한 모형(지침) 개발

○ 정책의 성분석은 정책 개발 및 평가의 주요 준거로 성(gender)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이 남녀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반영하여 정책의 성인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이나 사업이 기획단계에서 여성의 차별적인 요구를 고려했는지, 집행단계에서 여성의 접근과 참여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사회의 성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책의 성분석을 위해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선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정책 전문가, 입안자,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그 정책이 여성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 또는 정책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은 성인지적 정책의 개발, 수정, 후속 정책 입안의 토대가 될 수 있다.

I. 정책의 방향 설정 단계

1. 이 정책은 여성의 (어떤) 요구를 고려했는가?
2. 요구 파악단계에 여성, 여성단체, 성인지 전문가 등이 참여했는가?
3. 요구파악에 성별로 분리된 통계와 정보를 참고했는가?
4.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가? 정책이 여성의 생산성 증대, 자원과 혜택에 대한 접근과 통제의 증대,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II. 정책설계 단계

1. 정책목표의 성인지적 차원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정책목표에 여성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2.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이 파악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3.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에 여성의 참여와 자문이 이

루어졌는가?

4. 구성된 전략이 성인지적 목표달성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5. 정책을 설계하는 직원들이 성인지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가?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 취지,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가?
6. 정책 수혜대상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전달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7. 정책수행 예산 중 여성에게 지원되는 항목과 금액이 파악될 수 있는가? 재정지원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8. 정책추진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장치가 있는가?
9. 정책수행 결과의 평가 항목과 기준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가?

III. 정책수행 단계

1.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여성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직원의 성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성인지적 직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가? 정책수행에 여성직원의 참여 비율과 참여 방법은?
2. 정책수행과정에 여성(양성)의 적절한 참여와 자문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가?
3.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4. 여성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있는가? 집행과정에서 자원과 이익이 남성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양성에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분배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있는가?
5. 수행과정을 성인지적 차원에서 모니터하고 있는가?
6. 정책이 여성(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행 탄력성이 있는가?

IV. 정책결과평가 단계

A. 결과평가

1. 이 정책의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또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가?
2. 이 정책은 여성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 여성의 생산성 증

대에 기여했는가? 정책시행결과 여성의 역할, 지위, 사회의 성별분업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형평성 향상이라는 성인지적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는가?

B. 과정평가

1. 여성(양성)에 대한 정책 영향을 평가할 성분리적 통계나 지표가 생산되었는가?

2. 성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었는가? 보고서가 여성(양성)에 대한 정책의 영향, 성과를 담고있는가?

3. 평가에 성인지 전문가가 참여하였는가?

4. 양성 모두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했는가?

5. 정책평가를 통해 차후 정책개선 방안, 후속 정책 요구 파악 등의 후속 제안이 이루어졌는가?

*** 성분석의 핵심 준거**

1. 정책이 여성의 요구를 고려했는가?

2. 정책 개발, 집행, 평가의 전 단계에 여성을 참여시켰는가?

3. 정책이 여성지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다영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122-707)
전화번호: (02) 356-0070 (교402)
팩스: (02) 384-7164**

[별첨 2] 「각종 농업 정책의 성 분석(gender-analysis)」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각종 농업 정책에 대한 성 분석(gender-analysis)」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농업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된 성 분석 지표를 토대로 농업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기획 담당자와 시행자에게 정책 사례 분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성 분석의 중심 주체는 정책담당자로서 앞으로 이 지표를 토대로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 분석의 주요 목적입니다.

해당 농업정책의 관련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시각에서 지침에 따라 정책을 성 분석해주시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침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의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지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진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조사지는 각 연구진에게 e-mail로 8월 14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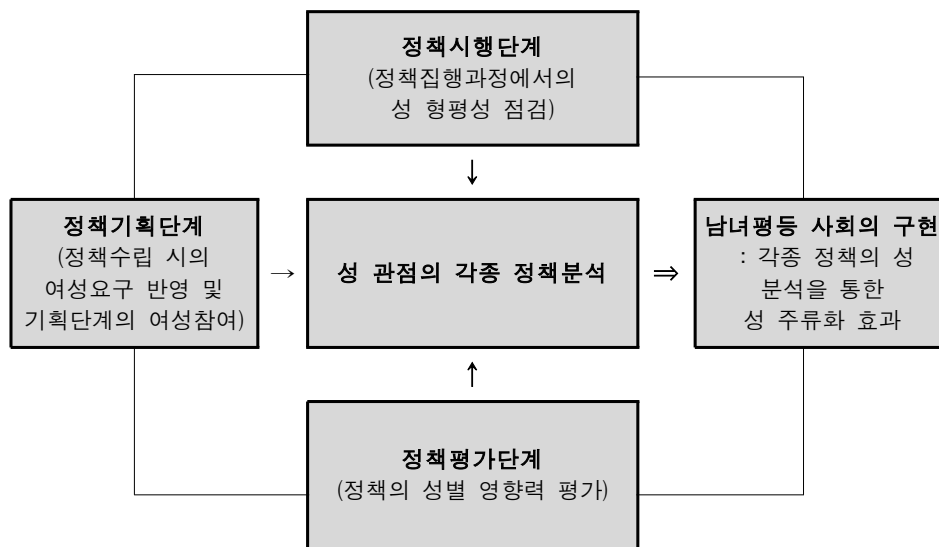
연구진 : 변화순, 김재인, 송다영, 박성정,
오현석, 김정섭
전 화 : 356-0070(교환) 402,302
e-mail : hwasoon@kwdi.re.kr(변화순)
janekim@kwdi.re.kr(김재인)
dayoung@kwdi.re.kr(송다영)
sjpark@kwdi.re.kr(박성정)
ohsnu@korea.com (오현석)
jngspkim@addfarm.com (김정섭)

한 국 여 성 개 발 원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석』 연구의 목표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성 관점의 정책분석(gender-based policy analysis)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인지적 정책 기획 및 시행을 통한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에 있습니다. 정책수립 시 여성 관련성의 파악 여부 및 여성 요구의 반영, 성인지적 정책집행과정의 점검, 정책의 성별 영향력 평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성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성 평등 기여도를 점검하고 차후 성평등한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종 정책의 성 분석을 위해 「정책기획단계」, 「정책시행단계」, 「정책평가단계」 등 총 3 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분석 항목과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아래에 제시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분석단계의 구성도>

이제부터 담당자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Ⅰ. 사업기획단계

1. 목적

1-1. 사업기획시 해당 사업이 여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고려하였다 ()
- 고려하였다면, 해당 사업과 여성이 관련되어 고려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② 고려하지 않았다 ()
-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해당 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셨습니다습니까?

- 1) 남성과 여성의 요구는 각각 무엇입니까?
2)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별도로 고려한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계층별, 지역별, 학력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
-있다면 요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② 없다 ()
4) 남성과 여성의 요구가 상충될 경우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었습니까? 그 이유는?

1-3. 사업기획을 위한 자문회의에 여성이 참여하셨습니다습니까?

- 1) 자문회의에 여성이 참여했습니까? 어떤 집단의 여성이 참여했습니까?(정책 수혜 대상 여성, 여성관료, 여성단체, 성인지 전문가 등)
2)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의견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3) 여성들이 내놓은 의견은 해당사업에 반영되었습니까?
① 반영되었다 ()
② 반영되지 않았다 ()
- 그 이유는?

1-4. 해당사업과 관련되어 남녀별로 분리된 정보(통계)가 있습니까?

- 1) 있다 ()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없다 ()

-없다면, 남녀별 분리 통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까?

1-5. 사업에 여성농업인 관련(성인지적) 목표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

- 여성농업인과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② 아니다 ()

-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사업이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습니까?

① 고려하였다 ()

- 남녀별로 예측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자녀출산, 가사, 육아역할, 사회 참여적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② 고려하지 않았다 ()

2. 추진방향

2-1.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추진방향이 별도로 제시되었습니까?

① 제시되었다 ()

- 제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② 제시되지 않았다 ()

-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근거법령

3-1. 해당사업에 여성관련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어떤 법령입니까?

② 없다 ()

- 없다면 시행근거는?

4. 연도별 지원계획

4-1. 여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사업량, 사업비)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

- 연도별 계획은?

② 없다 ()

4-2. 정책수혜대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해 놓았습니까?

까?

- ① 있다()
- 여성수혜자 비율은?
- ② 없다.

4-3. 정책수혜에 있어서 남녀별로 구분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 ()
- 사업 예산내 여성수혜 비율은?
- ② 아니다 ()

4-4.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어떤 항목입니까?
- ② 없다 ()

5. 사업개요 수립

5-1.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습니까?

- ① 고려하였다 ()
- 참여 비율은?
- ② 고려하지 않았다 ()
- 그 이유는?

5-2. 분야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성 참여비중이 높은 분야가 배제된 경우는 있습니까?

- ① 있다 ()
- 배제된 이유는?
- ② 없다 ()

5-3. 수혜자 대상 기준 선정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였습니까?

- ① 고려하였다()
- 여성에 대해 배려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② 고려하지 않았다 ()
- 그 이유는?

II. 사업시행 단계

6. 추진체계

6-1. 사업시행담당자는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와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약간 알고 있다
- ③ 잘 알지 못한다
- 잘 알지 못하다면 교육훈련을 받아 보았습니까?

6-2.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성 공무원 혹은 여성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 ()
- 있다면, 직급별 비율은?
- 수행하는 역할은?
- ② 없다 ()
-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3. 사업내용이 정책수혜자 여성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까?

- ① 잘 전달되고 있다 ()
- ②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
- 전달되지 않는다면 전달체계상 문제(행정적 요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달에 장애가 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행정사항

7-1. 사업의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성별 분리된 자료를 수집하여 중간평가하고 있습니까?
- 정책수혜자의 반응을 수렴하였습니까?
- ② 없다 ()

7-2.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 시행과정에 참조, 반영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
- 반영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② 아니다 ()

7-3. 성별 예산 집행이 있는 경우,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아니면, 그 이유는 ?
- 조정노력을 하였습니까?

III. 사업평가단계

8. 사업의 성영향 평가

8-1. 해당 사업에서 설정한 여성관련 목표가 달성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
- 얼마나 달성되었습니까?
- ② 달성되지 못하였다 ()
- 달성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8-2. 해당 사업이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 및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십니까?

- ① 크게 기여하였다
- ② 약간 기여하였다
- ③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 ④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8-3. 기여하였다면, 다음 중 어떤 점에 기여하였습니까?

- ① 여성의 생산활동을 늘리는데 기여하였다
- ② 여성의 집안내 역할을 분담하는데 기여하였다.
- ③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정치적 역할 증대에 기여하였다.
- ④ 기타:(기여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 분석틀 1로 가십시오. 분석틀 1은 해당 사업이 여성, 남성, 가구, 지역사회 수준에서 일의 성격, 일하는 시간, 자원 활용, 사회문화적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석 Tool I] 여성의 역할 및 환경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틀

정책의 목표 : _____

수준 \ 영역	변화			
	수행해야 하는 일 (labour)	수행 시간 (time)	활용 자원 (resources)	사회문화적인 환경 (culture)
여성				
남성				
가구				
지역 사회				

참고: Gender Analysis Matrix(GAM) Framework(Parker, 1993)

⇒ 질문이 계속됩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8-4. 해당 사업이 다음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이나 통제 권한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까?

- ①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ex. 자산, 수입, 저축, 상속, 고용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 ②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 (ex. 자산, 수입, 저축, 상속, 고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이 증대되었다
- ③ 사회·정치적 자원(ex. 보건 및 위생, 교육, 보육, 대출 서비스, 정치 참여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 ④ 사회·정치적 자원(ex. 보건 및 위생, 교육, 보육, 대출 서비스, 정치 참여 등)에 의사결정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이 증대되었다

⇒ 분석틀 II로 가시오. 분석틀 II는 사업이 개인, 가족,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의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과 통제권 증대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석 Tool II]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한 변화 평가틀

자원 분석		접근	통제
변화 평가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 사적 자산(토지, 집, 가축, 도구 등) 수입(가족의 수입) 저축 상속(권) 노동(고용계약, 임금교섭, 노동과 여가시간 조정 등)		
	사회·정치적 자원 보건 및 위생 교육·훈련 보육서비스 은행·신용 대출 지식·정보·기술 연료·용수 정치활동 참여권(노조, 정당, 단체)		

1. 참고: Harvard Analytical Framework(Overholt외 1985)
2. 접근(access) : 여성에게 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3. 통제(control) : 여성에게 누가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8-5.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이 성평등 및 여성의 주류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기여하였다 ② 약간 기여하였다 ③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④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 분석툴 III으로 가시오. 분석툴 III은 해당 사업이 특히 어떤 수준의 성평등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석 Tool III] 정책의 성평등 기여 수준 평가틀

분석 수준	평가
통제 ²	
참여 ³	
의식화 ⁴	
접근 ⁵	
복지 ⁶	

1. 참고: Longwe의 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中 Women's Empowerment Tool1: Level of Equality
2. 통제(control): 정책이 자원에 관한 여성의 통제 및 의사결정 권한의 증대에 기여.
3. 참여(participation): 정책이 의사 결정, 정책 개발, 기획, 실행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의 동등한 참여 증대에 기여.
4. 의식화(conscientisation): 정책이 어느 한 성이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다른 성을 지배해서 안 된다는 성적 평등에 대한 신념의 확산에 기여.
5. 접근(access): 정책이 토지, 신용, 노동 등 모든 자원과 그로 인한 혜택에 있어 남성과 비교 한 여성들의 접근 기회 상의 평등 구현에 기여.
6. 복지(welfare): 정책이 여성들의 물리적인 복지(소득, 음식 공급, 건강관리 등) 수준의 향상

9. 결과 수렴 및 활용

9-1. 수혜 여성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었다()
- 어떤 점입니까?
- ② 약간 긍정적이었다 ()
- ③ 약간 부정적이었다 ()
- ④ 매우 부정적이었다 ()
- 어떤 점입니까?

9-2. 해당 사업시행 후 발생한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3. 해당 사업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여성의 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에서 분석 지침에 따라 정책의 성분석을 해 보신 결과, 느끼신 문제점, 개선방안,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별첨 3] 보조분석틀 활용 결과

보조분석틀 순서

1. 후계농업인 육성
2. 영농기술 교육
3.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사업
4. 농업생활환경개선 및 정주권 개발
5. 농가도우미 사업

보조분석틀

- I. Gender Analysis Matrix(GAM) Framework
- II. Harvard Analytic Framework
- III. 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中
Women's Empowerment Tool1: Level of Equality

1. 후계농업인육성

<분석 Tool I> 여성의 역할 및 환경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틀

정책의 목표 : 여성후계농업인의 육성

	변화			
	수행해야 하는 일 (labour)	수행시간 (time)	활용자원 (resources)	사회문화적인 환경(culture)
여성	-농업경영 전반에 관한 경영주로서의 참여 : 생산, 관리, 구매, 판매 등에 관한 일을 조직하고 수행함.	-여성이 농업경영 전반에 나섬으로써 대부분의 시간을 농업경영과 관련된 활동에 배정	-영농후계자 지원 자금, 시설자금 -후계영농인이 관리하게 되는 농가의 각종 농업 생산자원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으로 전통적으로 남성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자
남성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 대개 남성은 연관사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	-남성의 경우 크게 수행시간에 변화가 없음.	-농가의 각종 농업경영요소	-여성농업인의 출현으로 남성농업인들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필요로하게 됨.
가구	-가족 구성원들의 집안일에 대한 부담율이 높아짐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가사일에 대한 부담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가사일 부담시간이 증대됨.	-농가의 각종 농업경영요소	-전통적인 남성농업경영인이라는 고정관념에 변화가 있음.
지역사회	-농업경영주로서 지역 사회에서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참여 -농업후계자로서 지역사회의 각종 오피니언 그룹에 참여	-농업경영활동에 대한 여성의 신규참여로 지역사회에서의 생산 활동시간이 증대 됨.	-후계여성농업인에 의한 농업경영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이 새롭게 조직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게 됨.	-후계여성농업인들의 성장으로 지역사회내의 각종 모임, 단체 등에서 여성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존의 여성농민단체내에서도 후계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

참고: Gender Analysis Matrix(GAM) Framework(Parker, 1993)

<분석 Tool II>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한 변화 평가틀

자원 분석	접근	통제	
변화 평가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 사적 자산 (토지, 집, 가축, 도구 등) 수입(가족의 수입) 저축 상속(권) 노동(고용계약, 임금교섭, 노동과 여가시간 조정 등)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으로 인해 농가가 보 유한 각종 농업생산 자원에 대한 여성들 의 접근이 향상됨 : 농지, 농기계, 정책 자금 등	-경영주로서 농가의 각종 농업생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음.
	사회·정치적 자원 보건 및 위생 교육·훈련 보육서비스 은행·신용 대출 지식·정보·기술 연료·용수 정치활동 참여권 (노조, 정당, 단체)	-여성후계농업인은 농 업경영주로서 지역사 회에서 사회적 지위 가 향상되었으며, 지 역사회의 각종 여 론형성기구에 대한 참 여확대로 지역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이 개선되고 있음.	-지역사회의 각종 의사결정기구 또는 여론형성기구를 통해 지역자원의 이용에 대한 여성의 통제력 이 개선되었음.

참고: Harvard Analytical Framework(Overholt외 1985)

<분석 Tool III> 정책의 성평등 기여 수준 평가틀

분석 수준	평가
통제	여성농업인에게 농업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 로써 농가의 각종 농업생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여성들의 의 사결정권이 신장됨.
참여	후계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에서 각종 여론형성기구에 참여 함으로써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을 복돋우는 계기가 되 고 있음.
의식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도한 농업경영에 후계여성농업인들 이 참여함으로써 농촌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기 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경영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됨.
접근	개별경영체의 농업생산자원과 지역사회 각종 자원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자원이 용에 관한 농촌여성의 접근이 확대됨.
복지	농업경영과 가사일의 중복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정신적, 신체 적 부담이 가중됨.

참고: Longwe의 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中 Women's
 Empowerment Tool1: Level of Equality

2. 영농기술교육

<분석 Tool I> 여성의 역할 및 환경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를

정책의 목표 :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영역 수준	변화			
	수행해야 하는 일 (labour)	수행시간 (time)	활용자원 (resources)	사회문화적인 환경(culture)
여성	-농업 보조 역할 에서 주도 역할 로 전환 -영농 및 경영에 참여 -노동 부담 가중 (농기계 작동 증 가)	-작업시간 단축 -전반적 노동 참여 시간 증가	-기계를 이용한 상호 공동작업 지원가능(공동 농 기계 영농단구성) -활용가능한 자원 증대 -농기계 작동 기술, 경영기법 습득	-생산 및 판매 방향 결정의 참 여, 주도성 증대 -의사결정력 증대 -여성 의식, 지도성 강화
남성	-농작업 부담 감소	-노동 시간 감소	-가족내 기계활용 인력 자원 증대	-여성과 생산 및 경영에의 공동 참여 증대
가구	-가구내 노동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생산성 향상	-가구 작업 시간 감축	-소득, 경제력 증대	-농작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 어져 가족 단합 에 도움
지역 사회	-여성이 생산 및 경영의 주체로 등장	-지역내 농기계 활용 증대로 작업시간 효율화	-지역내 농기계 활용 인력 확대 -남여의 능력 모두 활용	-여성 지위 향상

참고: Gender Analysis Matrix(GAM) Framework(Parker, 1993)

<분석 Tool II>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한 변화 평가틀

자원 분석		접 근	통 제
변화 평가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 사적 자산 (토지, 집, 가축, 도구 등) 수입(가족의 수입) 저축 상속(권) 노동(고용계약, 임금교섭, 노 동과 여가시간 조정 등)	생산도구(농기계)에 대한 접근 증대 수입 증대	수입,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권 증대
	사회·정치적 자원 보건 및 위생 교육·훈련 보육서비스 은행·신용 대출 지식·정보·기술 연료·용수 정치활동 참여권 (노조, 정당, 단체)	교육 접근기회 증대 지식, 정보, 기술에 접근성 증대	지역사회내 생산 및 경영활동에 대한 의 사결정권 증대

참고: Harvard Analytical Framework(Overholt의 1985)

<분석 Tool III> 정책의 성평등 기여 수준 평가틀

분석 수준	평가
통제	농기계교육을 통한 생산도구에 대한 여성의 통제, 의사결정 권 증대에 기여 경영교육을 통한 유통,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권 증대에 기여
참여	정책 기획과정에서의 참여는 생활개선사업 외에는 거의 없음
의식화	농업기술 및 농기계교육의 시행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생산 적 기능 강화로 농촌에서의 성평등의식 제고 경영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성평등에 기여
접근	영농기술교육기회, 경영교육기회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접근 제고
복지	영농교육, 경영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가능

참고: Longwe의 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中 Women's
Empowerment Tool1: Level of Equality

3. 여성정보화교육

<분석 Tool I> 여성의 역할 및 환경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틀

정책의 목표 : 여성정보화 교육

	변화			
	수행해야 하는 일 (labour)	수행시간 (time)	활용자원 (resources)	사회문화적인 환경 (culture)
여성	-정보화교육 받기 -정보통신하기 -(PC가 있다면) 가족간 사용시간 배정 논의하기 -자녀, 가족과의 컴퓨터, 인터넷 활용관련 대화 하기 및 자녀 이해 가능	-교육시간 약 18시간이상 -연습시간 무제한 증가 -농사일 및 가사일시간 감소 -여가시간 급격히 감소	-컴퓨터 -통신시설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가족에게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기 -농업인의 하루생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 대두 -여성의 정보의식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생활환경 변화, 사회활동 증가 -영농결정시스템에의 참여
남성	-정보통신하기 -(PC가 있고, 활용능력 있다면) 가족간 사용시간 배정 논의하기 -(PC를 다룰줄 모르면) 배우기 -자녀 및 가족간 대화하기 및 이해가능	-농사일 시간증가 -가사일 시간증가 -여가시간 감소 -PC 활용시간의 적절한 배정 및 시간증가	-컴퓨터 -통신시설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컴퓨터 교육의 추후효과 추정, 대비 -여성의 정보화교육으로 대화가능 -영농결정시스템에의 여성참여 인정 -가사역할 및 자녀교육 분담 등으로 평등한 분위기 확산
가구	-자녀와의 컴퓨터 및 인터넷 등에 대한 대화 가능 -자녀의 가사일 수행 -필요에 따라 농사일 돕기	-컴퓨터 사용시간 감소 -가사일 시간 증가 -농사일 돕는시간 증가 -공부시간 감소	-컴퓨터 -통신시설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자녀의 컴퓨터 사용 허용분위기 형성되나, 실제 시간은 감소 -문화시설 욕구증대 -가사역할 분담요구 증대
지역사회	-컴퓨터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향상 -정보화교육의 필요성 인식 -Cyber Community 형성(시공간을 초월한 문화형성) -PC방 활성화 (개인가정의 infra부족으로) -공공시설의 컴퓨터설치 필요성 대두	-컴퓨터 설치시설 (PC방 등)에서의 거주시간 증가 -시공간을 초월한 홍보 전략 가능	-컴퓨터 -통신(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시설 -공공시설내의 컴퓨터방 및 코너설치(주민 대화방) -PC방 설치	-농가홈페이지 증가 -시공간을 초월한 농사 홍보 전략 가능 -도시생활문화와의 동등성 유지 가능 -PC방 등 정보통신 관련 문화시설증대 -공공시설(마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의 PC방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생산물의 거래 활성화로 부유한 농촌 유지 -농업인력 부족현상초래

참고: Gender Analysis Matrix(GAM) Framework(Parker, 1993)

<분석 Tool II>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한 변화 평가틀

자원 분석	접근	통제	
변화 평가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 사적 자산 (토지, 집, 가축, 도구 등) 수입(가족의 수입) 저축 상속(권) 노동(고용계약, 임금교섭, 노동과 여가시간조정 등)	-컴퓨터, 통신시설, 소프트웨어 -초기: 정보화교육 학습비 후기: 인터넷 활용 -초기: 저축 안됨 후기: 저축가능 -여가시간 활용한 교육받기	-컴퓨터/통신시설/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 가능 하나 인터넷활용에 따른 전화세 지불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산물의 판매액에 대한 저축가능 -여가시간 및 노동시간 조정 필요(특히 여가시간 조정필요)
	사회·정치적 자원 보건 및 위생 교육·훈련 보육서비스 은행·신용 대출 지식·정보·기술 연료·용수 정치활동 참여권 (노조, 정당, 단체)	-컴퓨터의 사용과 몸과의 관계 고려 필요 -원하는 교육정보 수집 -다양한 정보 수집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및 정치활동 참여가능성향상 -정보화가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상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 필요) -원하는 교육정보 수집으로 많은 교육받을 수 있으나, 시간/교육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상대적 빈곤/ 자괴감 가질 가능성에 대한 대처(무료 및 저렴한 비용으로의 교육 활성화 등) 필요 -영농의사결정시스템(생산유통, 시장가격, 전망 등)에의 여성 참여 증가 다양한 정보수집은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향상되고 정치활동참여가능성 높아지는 것임 -정보화가 여성의 역할/지위에 미칠 영향/효과는 지대할 것임

참고: Harvard Analytical Framework(Overholt의 1985)

<분석 Tool III> 정책의 성평등 기여 수준 평가틀

분석 수준	평가
통제	자녀교육 수준 향상 / 여성들에게 편리한 교육훈련 방식 개발 / 농사일에 대한 정보 습득 / 문화/복지 향상 / 가족과의 대화 가능 / 재산관리 가능
참여	교육참여 / 정보관련 행사참여 / 농업정보화정책 참여 / 정보화 관련 사업 및 전자상거래 가능 / PC방에서 주저하지 않고 컴퓨터 활용 / 농가 홈페이지 증가 / 영농의사결정 시스템(생산유통, 시장가격, 전망 등)에의 참여 / 지역정보화 관련사업 참여
의식화	사회변화 수용가능성 확대 / 농업상거래의 중요성 인식 증대 / 새로운 정보 및 사회변화 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 / 부부, 가족간의 동등한 일 분배 등으로 평등의식수준 향상
접근	교육접근 /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정보에의 접근 / 전국 및 전 세계 시장과의 연계 강화 / 다양한 부분에서의 기여 가능성 확보
복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력 향상 가능성 증가 / 새로운 지역문화 도입 및 분위기 쇄신으로 지역문화복지 수준 향상 /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 증가 /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주민의 관심증대 및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 / 전국 및 세계정세 및 경제변화상황 인지능력 향상

참고: Longwe의 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中 Women's Empowerment Tool1: Level of Equality

4. 농업생활환경개선 및 정주권 개발

<분석 Tool I> 여성의 역할 및 환경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틀

정책의 목표 : 도로확장-주거부락(내부)과 장, 읍면 소재지
학교통학(외부)의 연결편리성

영역 수준	변화			
	수행해야 하는 일 (labour)	수행시간 (time)	활용자원 (resources)	사회문화적인 환경(culture)
여성	도로확장이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자녀교육에 관심증대	노동시간 감소, 여가시간 증가	자동차 소유로 작업장 접근이 용이	생활적 환경개선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남성	여성과 비슷함. 그러나 여전히 자녀교육은 엄마의 역할	옛날과 달리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없고 농사일이 더욱 바빠짐	인구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들이 임차농업, 위탁농업을 하게 됨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사역할 분담이 증대됨.
가구	땅을 지키고자 하는 노인가구가 남아 있을 수 있음	노인가구의 농사일 수행시간이 줄어들음	젊은이들 위탁농업활용	핵가족과 노인가족의 양극화 <핵가족> 자녀→학원수강수 증가 엄마→문화시설 욕구증가 아빠→가사역할 분담증가
지역사회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주민의 결속력활발 -혐오시설 차단에 대한 주민들 움직임 활발	-지역주민의 이동시간이 빨라짐 -업무 수행시간이 줄어들음	여성자원 인력의 활용 및 개발의 필요성	-정주인력의 유지 및 증가 -거주하면서 도시 생활하는 인구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증가는 마을 회관, 여성회관 설치욕구를 증가 시킴.

참고: Gender Analysis Matrix(GAM) Framework(Parker, 1993)

<분석 Tool II>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한 변화 평가들

* 경제적 여건 향상으로 인한 영향이라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자원 분석		접 근	통 제
변화 평가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 사적 자산 (토지, 집, 가축, 도구 등) 수입(가족의 수입) 저축 상속(권) 노동(고용계약, 임금교섭, 노동과 여가시간 조정 등)	-생산, 판매: 여성들이 함께 함 -상품포장도 같이 함 -노동은 스스로가 주인이며 노동자임.	-재산권, 소유권은 아직은 없음.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됨. -부락행사에서 남성노 인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면(준비, 행사진 행등은 여성이 결정)
	사회·정치적 자원 보건 및 위생 교육·훈련 보육서비스 은행·신용 대출 지식·정보·기술 연료·용수 정치활동 참여권 (노조, 정당, 단체)	-보육서비스 접근용이 -지식, 정보, 기술: 여성의 접근이 증대 -은행, 신용대출은 여 성에게 재산권/소유권 이 없어 접근 용이하 지 않음. -인터넷 주문생산 활 발함	-교육결정은 여성이 전권

참고: Harvard Analytical Framework(Overholt외 1985)

<분석 Tool III> 정책의 성평등 기여 수준 평가들

분석 수준	평가
통제	자녀교육 마을행사, 문화/복지육구 재산관리, 가족활동
참여	사업특성상 없음. 다만 요구가 있을 때 사업이 타당한가 / 수익성이 보 장되는가 고려하여 적극적 수렴
의식화	기여한다(결과적으로 엄청) 평등의식수준이 높아졌다
접근	접근이 향상, 많이 접근되었다
복지	당연히 향상되었다 의사결정, 엄마들 일정

참고: Longwe의 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中 Women's
Empowerment Tool1: Level of Equality

5. 농가도우미사업

<분석 Tool I> 여성의 역할 및 환경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틀

정책의 목표 : 여성농업인 생산성 유지 및 건강증진

영역 수준	변화			
	수행해야 하는 일 (labour)	수행시간 (time)	활용자원 (resources)	사회문화적인 환경(culture)
여성	출산때 농사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몸조리를 하게 됨	농사일에 쓰는 시간만큼 단축	건강, 산후기간 동안의 농업생산성	출산후에 몸조리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남성	부인 출산후에도 계속 농사일을 변동없이 할 수 있음	일하는 시간은 변동이 없으나 부인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피곤이 줄어들	농가생산활동 유지로 가계 소득보전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부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농업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가구	-시아머니 등 식구들이 산모 몸조리에 시간을 써줄수 있음 -연속적 생산	여성이 출산전에 했던 농사일을 가족원이 대신하 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변동 이 없음	-출산한 여성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살 수 있는 환경 -가계보조: 도우 미제도가 없다면 자비로 충당해야 함	출산으로 인해 분주해 지는 가족생활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어려움 이 경감
지역 사회	일하지 않거나 일을 할 여유가 있는 잉여노동력 이 출산시에 서 로 이용하게 됨	전체적으로 일하 는 사람이 늘었 기 때문에 생산 활동시간은 증가	-유휴 농업인구 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 회로 수입증가 -개별 농가가 어 려움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지역 적으로 부가창출	여성도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 고 이에 대해서도 심 기가 불편해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참고: Gender Analysis Matrix(GAM) Framework(Parker, 1993)

<분석 Tool II>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한 변화 평가틀

자원 분석		접 근	통 제
변화 평가	개인 및 가족관련 자원 사적 자산 (토지, 집, 가축, 도구 등) 수입(가족의 수입) 저축 상속(권) 노동(고용계약, 임금교섭, 노동과 여가시간 조정 등)	-출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 마련 -정서적 안정 시간확보 -가족구성원 전체의 여유로움 확보	-생산활동 및 여가시간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출산전후 잉여노동력 사용 에 따른 추가지출량을 조 절할 수 있음
	사회·정치적 자원 보건 및 위생 교육·훈련 보육서비스 은행·신용 대출 지식·정보·기술 연료·용수 정치활동 참여권 (노조, 정당, 단체)	-농촌지역사회 여성농 업인 노동력 및 역할 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의 변화 -농촌지역사회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력 체계 마련 기회	-여성농업인의 산전후휴가 개념의 정립 및 확산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가치 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여 성권한 증대 기여

참고: Harvard Analytical Framework(Overholt외 1985)

<분석 Tool III> 정책의 성평등 기여 수준 평가틀

분석 수준	평가
통제	대체노동력이 확보됨으로써 농촌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그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참여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됨으로써 향후 가구 내에서나,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남성들과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
의식 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여성들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영농일과 가계경제에의 기여도를 재확인시키고 무급가족노동종사자의 위치에 대해서 재고하게 됨.
접근	여성이 출산 후에 충분히 쉬 후에 생산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어서 생산활동 및 의사결정 등에의 접근성이 유지됨.
복지	기본적으로 농가도우미 제도는 여성들의 산전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참고: Longwe의 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中 Women's Empowerment Tool1: Level of Equality